



승인협의번호
제11321호



2013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12년 기준 조사

2013. 12

 문화체육관광부

I. 2012년 기준 조사 개요	
1. 2012년 기준조사 조사 방향	3
2. 2012년 기준조사 조사 목적	4
3. 2012년 기준조사 특징	5
4. 조사내용 및 방법	10
II.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1. 사업체 수	27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1. 총 괄	41
2. 매출액	42
3. 종사자수	50
4. 사업실적	57
5.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64
6. 특성항목	66
7.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조사 결과	70
8. 성과 및 제언	74
IV. 부록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81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84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 정의	115
4. 조사표와 결산서 관계	119
5. 조사표	121

표목차

<표 I-1> 조사대상	11
<표 I-2>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구분류기준)	14
<표 I-3>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신분류기준)	15
<표 I-4>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구분류기준)	15
<표 I-5>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신분류기준)	16
<표 I-6>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	18
<표 I-7>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구분류기준)	19
<표 I-8>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신분류기준)	19
<표 II-1> '09~'11년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구분류 기준)	27
<표 II-2> '10~'12년 15개 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	28
<표 II-3> '12년 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	29
<표 II-4> '12년 20개 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	31
<표 II-5> '11~'12년 설립년도 비율	32
<표 II-6> '12년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33
<표 II-7>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신분류기준)	33
<표 II-8> '10~'12년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34
<표 II-9> '10~'12년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구분류기준)	35
<표 II-10> '12년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35
<표 II-11>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36
<표 II-12> '10~'12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37
<표 II-13> '12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38
<표 III-1> '09~'12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42
<표 III-2> '11~'12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43
<표 III-3> '12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44
<표 III-4> '10~'12년 사업종류별 매출액	46
<표 III-5> '12년 사업종류별 매출액	46
<표 III-6> 2012년 조직형태별 매출액	47
<표 III-7> '10~'12년 종사자수별 매출액	49
<표 III-8> 2012년 종사자수별 매출액	49
<표 III-9> '11~'12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51

<표 III-10> '10~'12년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52
<표 II-11> '12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52
<표 III-12> 2012년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54
<표 III-13> 2012년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55
<표 III-14> 종사자 수별 종사자	56
<표 III-15> 2012년 종사자수별 종사자	56
<표 III-16> '11~'12년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및 비중	58
<표 II-17> '12년 20개 중분류별 실적 현황	59
<표 III-18> '09~'12년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60
<표 III-19> '11~'12년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61
<표 III-20> 2012년 신분류기준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61
<표 III-21> '11~'12년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	62
<표 III-22> 2012년 신분류기준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	63
<표 III-23>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64
<표 III-24>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65
<표 III-25> '11~'12년 운동 및 경기 용품유통 임대업 상품별 구성비	66
<표 III-26> 2012년 신분류 기준 스포츠 용품업 상품별 구성비	67
<표 III-27> 스포츠 시설업 연간 영업개월수 및 이용인원	68
<표 III-28>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69
<표 III-29> 2012년 신분류기준 스포츠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69
<표 III-30> '09~'12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70
<표 III-31> 육성발전 장애요인	71
<표 III-32> 육성발전 지원부문	72
<표 III-33> 매출 증대방안	73

그림목차

그림 I-1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신분류기준)	15
그림 I-2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신분류기준)	16
그림 I-3	대분류별 모집단 및 표본 비율 (신분류기준)	19
그림 II-1	10~12년 기준 모집단수 비교 (구분류기준)	28
그림 II-2	'12 설립년도 비율	32
그림 II-3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율 (신분류기준)	34
그림 II-4	종사자 수별 사업체 비율	36
그림 II-5	'12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비율	38
그림 III-1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율(2012년)	47
그림 III-2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율(2012년)	48
그림 III-3	종사자수별 매출액 비율(2012년)	50
그림 III-4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비율(2012년)	54
그림 III-5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비율(2012년)	55
그림 III-6	종사자 수별 종사자수 비율(2012년)	57
그림 III-7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비율(2012년 신분류기준)	60
그림 III-8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비율(2012년)	62
그림 III-9	사업종류별 영업 이익률(2012년)	63
그림 III-10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64
그림 III-11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65
그림 III-12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67
그림 III-13	스포츠 시설업업 연간 이용객 비교	68
그림 III-14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69
그림 III-15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부문(2012년)	70
그림 III-16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2012년)	71
그림 III-17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2012년)	72
그림 III-18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2012년)	73

1. 본 조사 자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스포츠산업 통계조사(정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321호) 결과를 종합 집계, 분석한 결과이며, 조사주기는 1년임
2. 스포츠산업은 2007.4.6 개정(법률 8333호)된「스포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본 「2013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특수분류로 분류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를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함
3. 2011년 기준조사까지는 15개 중분류(45개 세세분류)로 구축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이하 구분류)로 진행이 되었으며, 금번 2012년 기준조사에서는 20개 중분류(65개 세세분류)로 새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이하 신분류)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과거자료와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구분류체계로 과거자료와 분석하고, 신분류체계로도 분석하여 작성함
4. 본 조사는 스포츠산업(세세분류)을 모집단으로 한 후 전국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를 추정하였으므로 자료 이용 시 전국 이상 단위로만 활용하여야 함
5. 조사결과는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및 타조사 자료인용으로 이루어짐
6. 조사수행기관은 한국통계진흥원이 자료수집, 산출 등 총괄적인 조사를 진행함
7. 실태조사 결과 중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영업비용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임을 이용에 참고하기 바람

8. 조사항목별 집계과정에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이로 인하여 하위분류의 합계가 상위분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9. 본 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집계하였으나 기업회계 기준에서 업종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 업종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실제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0. 내검과정에서 전년도 조사실적에 오류가 발견된 사업체는 수정 보완하여 집계하였음
11. 해당 자료가 없거나 미상일 경우는 [-]을 표시함
12.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3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o페이지에서 전채 또는 역재”라고 기재하여야 함
13. 본 보고서에 실린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2-3704-985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02-970-9573)에 문의바람. 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은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도 볼 수 있음



I 2012년 기준 조사 개요



1 2012년 기준조사 조사 방향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2012년 기준조사까지 6회가 진행된 사업이며, 국가승인통계로서는 2009년 기준조사부터 4회 째 실시된 사업임
 - 2008년 기준조사까지의 스포츠산업 통계는 정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공식적으로 조사·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의사결정의 실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따라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정확한 모집단을 기초로 산출되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2010년)받고 2013년 네 번째로 사업을 진행함
- 2012년 기준조사에서는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확대하여 진행함(「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 적용)
 - 2011년 기준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2」 적용)
- 2011년 기준조사에서 연도별, 부문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구축틀을 활용하여 2012년 기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조사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스포츠산업의 대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함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대규모 모집단을 통한 대표성 확보
- 2011년도 기준조사에서 나타난 모집단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 전 모집단 정비를 실시함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65개 세세분류 중 38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사용

-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공식적인 지표 활용을 위해 국가승인지정통계를 유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함
-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 DART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 등과 비교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검증 실시함
- 모집단 정비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수를 추정함

2 2012년 기준조사 조사 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적용을 통한 국가승인통계 유지
- 기존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정책의사결정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사업 이였지만, 2009년 기준조사부터 2012년도 조사까지 국민에게 스포츠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등을 알리기 위한 공표의 목적을 두고 진행함
- 최신 모집단 확보 목적
- 모집단 파악은 통계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2012년 기준조사에서는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를 표본 추출 틀로 활용하여 최신 모집단 확보에 주력
- 모집단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총 65개 세세분류 중 38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사용
- 스포츠산업 정책 활용 목적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의 공식적인 지표 활용의 극대화 추구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한 공표
- 스포츠산업의 특성상 영세업체가 많아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조, 자료수집원 교육, 각 지자체의 사업체 DB 등을 이용한 체계 구축



- 총량개념의 통계를 통한 스포츠산업 전반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
 - 스포츠산업시장의 전체규모 뿐만 아니라 종사자 규모, 인력채용 현황, 영업손익 등 총량개념의 통합적인 자료 산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 스포츠산업시장의 사업체 경기전망, 인력채용 현황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연간이용객 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3

2012년 기준조사 특징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 적용
 -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는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확대하여 진행
 - 2011년 기준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
- 모집단 보완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잠정)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65개 산업세세분류 중 38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를 사용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지방 현장조사원을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수행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복권발행업, 스키장운영업 등 사업체 개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 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Mixed Mode Survey를 활용한 단계적 실시
 - ※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원칙(자기기입식 병행)으로 하고 표본사업체 수가 적은 일부는 이메일 및 팩스조사 병행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사전 조사자료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 내검 및 집계 철저히 통계정확성 제고
- 2011년 기준조사와 동일하게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실행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의 기획부터 보고서 생산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국가통계생산 표준프로세스(KSBPM : Korea Statistics Business Process Model)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시킨 업무프로세서로 기관 간 통계경험과 전문성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범용 통계정보시스템
- 유사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영공시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자료와 비교·검토, 수준검증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 정합성, 정확성을 제고

※ 조사자료 검증 및 수준분석을 위한 비교자료

- 2012년 사업체기초조사 통계 비교·검토
-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와 비교·검토
- DART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와 비교·검토

■ 2012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분류 변화 적용

- 국가승인통계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개편된 스포츠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실태조사를 진행함
- 2012년 기준조사는 3개의 대분류, 7개의 중분류, 20개의 소분류, 65개의 하위분류인 「산업특수분류」를 근거로 실시하되 스포츠산업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분류에 항목을 추가하였음
 - ※ 전년도 분류와 비교하면 신설된 세세분류는 23개이며 통합된 분류는 2개(기존 4개 분류를 2개로 통합), 제외된 분류는 1개로 나타남
- 각 업종별 하위업종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2012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명시된 부문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 09~11년 기준조사와 2012년 기준조사 분류 변화(세세분류 기준)

- ※ 12년 기준조사 적용(신분류)**
- 스포츠 시설업
(중분류1, 소분류6, 세세분류19)
 - 스포츠 용품업
(중분류2, 소분류6, 세세분류26)
 - 스포츠 서비스업
(중분류4, 소분류8, 세세분류20)



- ※ 09~11년 기준조사 적용(구분류)**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소분류4, 세세분류17)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소분류7, 세세분류21)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소분류3, 세세분류5)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소분류1, 세세분류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비고	
1.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1-1	경기장 운영업	1010101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1010102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1010103	91113	경주장 운영업			
		1-2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1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202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010203	91133	수영장 운영업			
				1010204	91134	볼링장 운영업			
				1010205	91135	당구장 운영업			
				1010206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1010207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1010208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				
		1010209	91293*	기원 운영업		신설			
		1-3	골프장및스키장 운영업	1010301	91121	골프장 운영업			
				1010302	91122	스키장 운영업			
		1-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401	91231	납시장 운영업			
				1010499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		
1-5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1019900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6	스포츠건설업	1020001	41226*	조정 건설업		신설			
		1020002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신설			
2.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업	2-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10101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볼링용구, 당구용구	통합
				2010101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10102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2010103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010104	33303	납시 및 수렴용구 제조업			
				2010105	33302	놀이타용 장비 제조업			
				2010106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2-2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2010199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통합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010201	14191	서츠 및 체육복 제조업			
		2-3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10202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2010203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구명자켓, 구명벨트		
				2010204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제조		
		2-4	운동및경기용품 도매업	2010301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스포츠의류 부분품		
				2010302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장기용 및 특수용 신발제조		
				2010303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운동및경기용품 도매업	2020101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추가/ 통합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2020102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및 부품 도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비고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5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	2020103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신설		
				2020104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신설		
				2020105	46420*	신발 도매업		신설		
				2020201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추가/통합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소매			
				2020202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2020203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신설		
				2020204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신설		
				2020205	47420*	신발 소매업		신설		
				2020206	47911*	전자상거래업		신설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2-6	운동및경기용품 임대업	2020300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3.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1	스포츠 경기업	3010100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3010201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포츠 토도							
3-2	스포츠 베팅업	3010299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경마, 경륜, 경쟁 관련 배팅시설			
									3010301	73901
3-3	스포츠 마케팅업					3010302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신설
						3010303	71531*	경영컨설팅업		신설
						3010399	91199	그외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4	스포츠 미디어업				3020101	58121*	신문 발행업	스포츠신문	신설
						3020102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신설
						3020103	60100*	라디오 방송업		신설
				3020104	60210*	지상파 방송업		신설		
				3020105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신설		
				3020106	60222*	유선 방송업		신설		
				3020107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신설		
스포츠 교육기관	3-6	스포츠 교육기관		3030001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3030099	85612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3-7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990101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신설		
				3990199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신설		
	3-8	스포츠 여행업	3990200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신설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 신설업종(30개 업종, KISC 기준) : 91293, 41226, 41229, 46463, 46413, 46491, 46420, 47640, 47416, 47430, 47420, 47911, 47919, 47993, 47999, 73903, 71531, 58121, 58122,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63991, 58211, 58219, 75211, 75212, 75290
 ** 제외업종(1개 업종) : 11209(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4 조사내용 및 방법

4.1 조사설계

조사 지역	▶▶	■ 전국(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조사 범위	▶▶	■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표본 (Sample) 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962개 업체 <li style="padding-left: 20px;">- 스포츠 시설업 : 2,771 개 <li style="padding-left: 20px;">- 스포츠 용품업 : 2,963 개 <li style="padding-left: 20px;">- 스포츠 서비스업 : 1,228 개
조사 내용	▶▶	■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스포츠산업 비중, 특성항목, 사업체 경영전망, 설문문항 등(16개 항목)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사업체수가 적은 경우 해당 사업체는 e-mail조사를 병행 실시 ■ 응답자의 회신 편의성을 고려한 전화, 이메일, Fax 조사 병행
조사 기간	▶▶	■ 2013. 10. 16. ~ 11. 25

4.2 조사대상

- 본 조사는 조사기준일(2012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며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 본 조사에 포함되는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의 3개 산업을 대분류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 스포츠 시설업은 경기장 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수상스포츠 시설운영업, 스포츠건설업으로 구분



- 스포츠 용품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으로 구분
- 스포츠 서비스업은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미디어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스포츠 여행업으로 구분

<표 I -1> 조사대상

대분류	중분류명
1. 스포츠 시설업	■ 경기장 운영업
	■ 참여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수상 스포츠시설 운영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스포츠 건설업
2. 스포츠 용품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범선 요트, 카누, 카약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볼링용구, 당구용구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등)
	■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구명자켓, 구명벨트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의류 부분품 등)
	■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산용 배낭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등)
	■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3. 스포츠 서비스업	■ 스포츠 경기업
	■ 스포츠 베팅업
	■ 스포츠 마케팅업
	■ 스포츠 미디어업
	■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 스포츠 교육기관
	■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스포츠 여행업

4.3 조사단위

- 사업체 단위: 단독사업체, 지사(지점) 등
- 개별 사업체 「(본사(지사 제외), 지사(점), 영업소 등) 별 조사표 작성
 - 본사와 지사가 표본으로 동시에 대상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본사를 대상으로 기업체 단위 조사
 - 본사단위: 경마, 경륜, 경정 등 일부 업종

4.4 조사절차

구분	주요 업무 내용	관련기관 및 부서
준비 단계	조사항목 설정 및 조사표 설계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	
	표본설계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한국통계진흥원
	↓	
현장 조사	입력·내검을 위한 나라통계 시스템 점검	한국통계진흥원
	↓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표류 인쇄	한국통계진흥원
	↓	
	조사원 채용	한국통계진흥원
자료처리 및 집계·제출	↓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	
	준비조사	한국통계진흥원
	↓	
자료처리 및 집계·제출	본조사 실시	한국통계진흥원
	↓	
	조사표 내검 및 입력	한국통계진흥원
	↓	
	조사표 제출	한국통계진흥원
자료처리 및 집계·제출	↓	
	조사결과 검토 및 집계	한국통계진흥원
자료처리 및 집계·제출	↓	
	최종보고서 작성	한국체육과학연구원



4.5 조사모집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포괄범위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업, 용품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모집단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표본추출틀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 사업체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38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 조사모집단 보완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자료에서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 65개 스포츠산업 산업세세분류에 해당하는 231,254개 사업체 중 38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전화조사, 전년도 조사결과, 행정자료 매칭 등으로 사전 보완한 85,863개 사업체
- 모집단 확정결과 반영 및 부적격으로 조사된 사업체수 추정하여 제외
 - (모집단확정)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확정자료인 84,513개
 - (부적격추정) 확정된 모집단 및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업종별 층별 스포츠산업 적격모집단수를 추정 후 추정된 모집단수를 이용하여 최종 가중치를 계산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 및 가중치 계산

- 세세분류 업종별(h) 층별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hat{N}_h)를 다음과 같이 추정

$$\hat{N}_h = \sum_{i=1}^K \left(N_{hi}^S \times \left(\frac{n_{hi}^S - I_{hi}}{n_{hi}^S} \right) \right) + n_h'^C$$

N_{hi}^S : 확정보집단의 h 업종 i 층 표본층 전체 사업체 수

i : 표본층 층자 ($i = 1, \dots, K$)

n_{hi}^S : 설계 당시 h 업종 i 층 표본 사업체 수

$n_h'^C$: 조사 완료된 h 업종 전수층 사업체 수

I_{hi} : h 업종 i 층의 부적격 사업체 수

\hat{N}_h : h 업종 i 층의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추정 사업체 수

○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결과

-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는 68,826개로 추정(구분류기준)
-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는 84,246개로 추정(신분류기준)

<표 I-2>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구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3,577	5.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4,152	49.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0,793	15.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0,304	29.5
합계	68,826	100.0

<표 I-3>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35,412	42.0
스포츠 용품업	26,701	31.7
스포츠 서비스업	22,133	26.3
합계	84,2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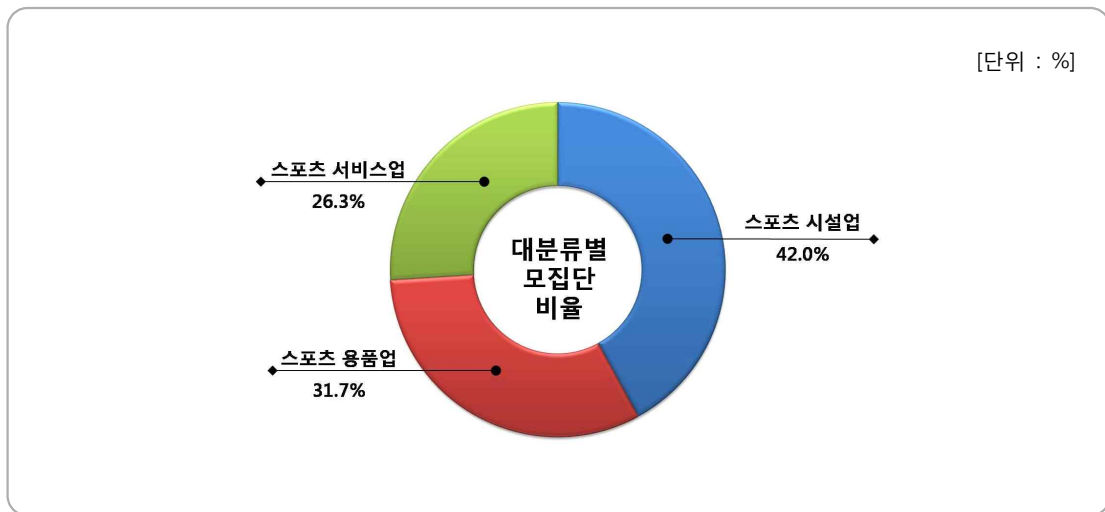


그림 I-1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신분류기준)

<표 I-4>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구분류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종사자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38	15.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6	56.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9	1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9	16.0
합계	242	100.0

<표 I-5>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신분류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종사자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134	39.1
스포츠 용품업	123	36.0
스포츠 서비스업	85	24.9
합계	3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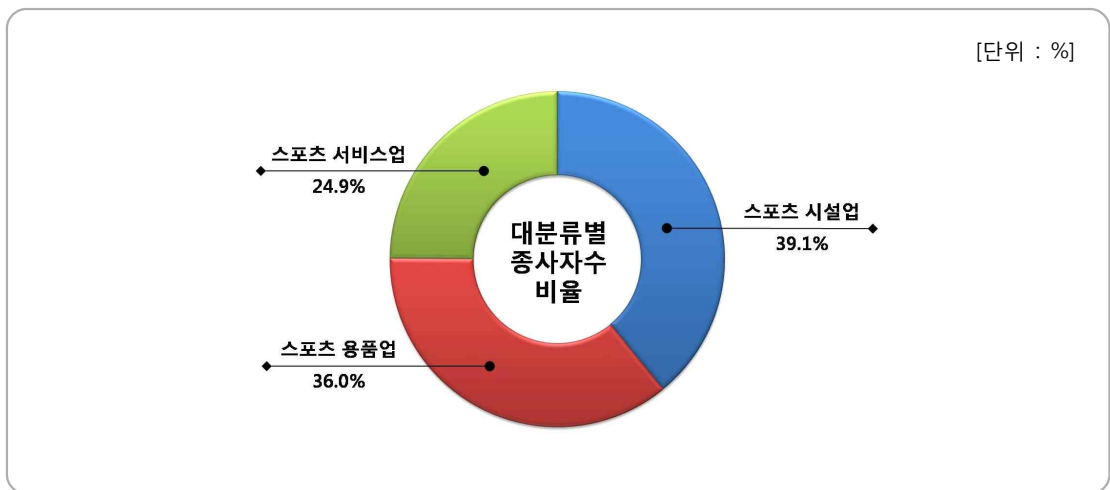


그림 I-2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신분류기준)

■ 모집단의 층화

- 공표범위는 65개 세세분류 업종별 주요항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표본규모를 검토
- 층화항목은 65개 세세분류와 적격/적격미상의 조합을 고려한 총 80개의 1차 설계 층의 목표오차를 주어 표본수 산정층화항목

■ 층화 방법

- L-H층화법

■ 모집단이 치우친 분포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응용절사법¹⁾과 L-H층화방법²⁾ 중

1) 주어진 신뢰도와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표본수를 가장 작게 하는 절사점을 택한 후 특성변수의 값이 절사점보다 큰 업종은 전수조사를 하고(전수층) 절사점보다 작은 업종은 표본추출을 하여 조사하는 방법 (표본층)



L-H층화법 선택

- L-H층화 후 부차모집단별로 2~5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표본층은 네이만 배분법을 적용해서 표본규모 계산 및 배분

■ 표본추출틀 보완

- (보완대상)한국표준산업분류와 스포츠산업분류 간 포괄범위가 다른 38개 중 아래 36개 산업세세분류*에 속한 170,779개 사업체 (2개는 본사조사 대상으로 별도 보완**)

* 91292, 41226, 41229, 33309, 31991, 33302, 33999, 25200, 14191, 13224, 13229, 14199, 15129, 15219, 15220, 46463, 46465, 46413, 46491, 46420, 47640, 47632, 47416, 47430, 47420, 47993, 69210, 73901, 73903, 71531, 91199, 58122, 60222, 63991, 85611, 58211, 58219, 75211

** 91241, 91249

- (보완방법) 위에 언급한 산업세세분류에 속하는 사업체를 전화조사 및 전년조사와 교차검토, 본사조사를 통해 스포츠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대상외' 처리하여 보완함

■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결과

-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는 구분류 기준 68,826개로 추정되었으며, 신분류기준으로는 84,426개로 추정
-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에서 전체 모집단 사업체를 69,027개로 추정하였고, 2012년 기준 조사에서는 68,826개 사업체로 추정함
- 2011년 기준조사와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업체는 201개가 줄었으며 특히,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1,119개가 줄고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476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모집단을 표본층과 전수층으로 나누는 것은 응용절사법과 비슷하지만 주어진 층 수 및 허용오차 하에서 최적의 층경계점을 계산하고 마지막 층은 전수층으로 나머지 층들은 표본층으로 설계하는 방법

<표 I -6>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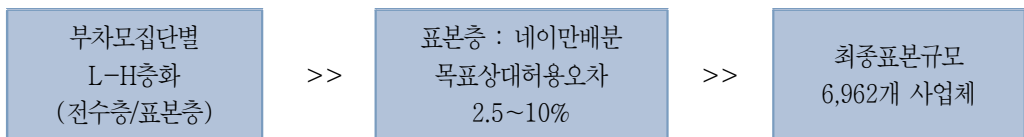
	스포츠산업실태조사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결과		
	'11년 기준 조사 추정값(A)	'12년 기준 조사 추정값(B)	(B-A)
전체	69,027	68,826	-20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696	3,577	-1,11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3,576	34,152	57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0,864	10,793	-7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91	20,304	413

4.6 표본규모

20개 소분류 업종으로 부차모집단을 고려하여 실시함

■ 표본 규모

- 부차모집단별 분포에 따라 L-H층화를 적용하여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층화하고, 표본층에 대해서 네이만 배분의 상대허용오차는 2.5~10%*로 설정하여 표본규모 계산
 - 상대허용오차는 2011년 기준 조사결과 중분류별 주요항목(스포츠 종사자수, 스포츠 매출액)의 CV를 고려하여 적절한 표본규모가 되도록 설정
- L-H층화하지 않고 전수조사만 할 산업세세분류 업종
 - 본사나 지사를 통해 조사되는 다음의 8개 산업세세분류 180개 사업체가 전수조사 대상(25200, 91113, 91121, 91122, 91199, 91241, 91249, 73901)
- 최종 표본규모는 6,962개 사업체



<표 I-7>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구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713	13.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636	48.7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152	21.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06	16.8
합계	5,407	100.0

<표 I-8>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2,771	40.0
스포츠 용품업	2,936	42.3
스포츠 서비스업	1,228	17.7
합계	6,9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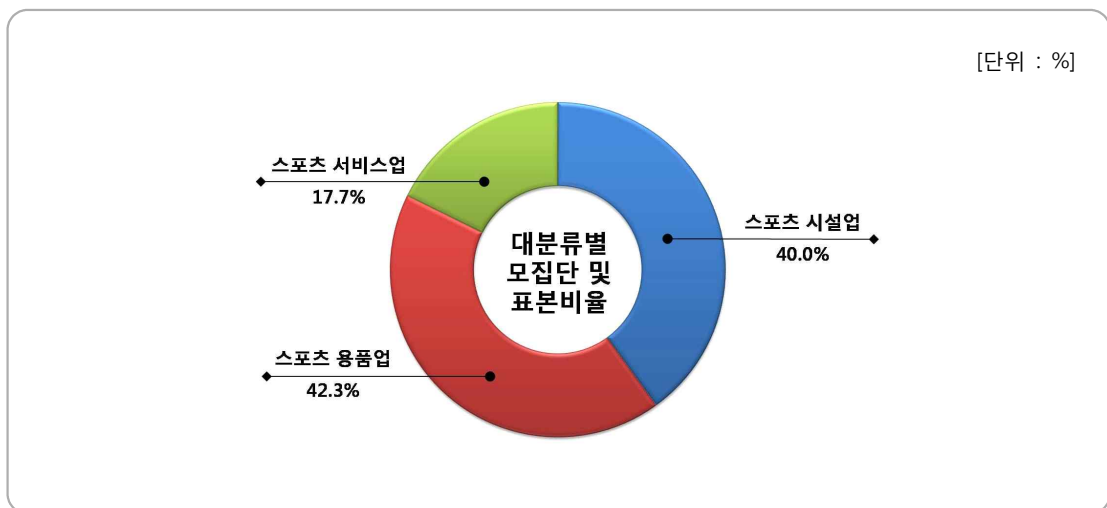


그림 I-3 대분류별 모집단 및 표본 비율 (신분류기준)

4.7 시장규모 추정

■ 대분류별 주요항목 총계 추정 결과

- (표본설계) 3개 대분류별 종사자수 총계의 목표CV는 1.7~2.5%로 설계하였고, 조사결과 대분류별 스포츠종사자수 총계의 CV는 1.5~7.1%, 대분류별 스포츠매출액 총계의 CV는 2.4~5.4%
- (추정결과) 스포츠종사자수 총계의 65개 세세분류별 CV는 0.1~27.9%, 스포츠매출액 총계의 CV는 0.1~29.0%로 CV가 5% 보다 큰 일부 업종의 중분류별 공포는 유의해야 함

모수추정

■ 전체 스포츠산업 총계 추정식

$$\hat{X} = \sum_h \hat{X}_h$$

■ 65개 세세분류 업종별 총계 추정식

$$\hat{X}_h = \hat{X}_{hc} + \hat{X}_{hs}$$

$$\hat{X}_{hc} = \sum_j x_{hj}$$

$$\hat{X}_{hs} = \sum_i \sum_j w_{hi} x_{hij} \quad \text{단, } w_{hi} = \frac{N_{hi}}{n_{hi}}$$

- 첨자 h : 업종
 c : 전수층
 s : 표본층
 i : 표본층 내의 L-H층
 j : 조사된 기업체
- 변수 n : 표본수
 N : 모집단수
 X : 특성치 총계
 x : 조사된 기업체의 특성치

분산추정

- 전체 스포츠산업 분산 추정식

$$Var(\hat{X}) = \sum_h Var(\hat{X}_h)$$

- 각 업종의 시·도별 분산 추정식

$$Var(\hat{X}_h) = Var(\hat{X}_{hs}) = \sum_i Var(\hat{X}_{hi}) = \sum_i \frac{N_{hi}(N_{hi} - n_{hi})}{n_{hi}} s_{hi}^2$$

$$\text{단, } s_{hi}^2 = \frac{1}{n_{hi} - 1} \left(\sum_j x_{hij}^2 - \frac{(\sum_j x_{hij})^2}{n_{hi}} \right)$$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 $SE(\hat{X}) = \sqrt{V(\hat{X})}$
- $\hat{CV} = \frac{SE(\hat{X})}{\hat{X}} \times 100$

4.8 조사의 한계 및 유용성

■ 조사의 한계

- 표본설계의 특성변수는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관심 항목인 스포츠산업 종사자수,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사업체가 응답한 스포츠산업 비중을 이용해 역계산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변동이 반영되어 설계상의 기준 CV에 비해 관심 항목의 CV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
-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사업체가 산재되고 표본대체가 많아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시간 및 경비가 많이 소요됨
- 현 특수분류(스포츠산업)의 구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분류내에 산업분류간 동질성이 부족하여 특성항목별 조사사항에 한계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회전목마 제조업,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기원 운영업은 포함되나 유원지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등이 제외되며, 복권발행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은 특성항목인 연간 이용인원 수를 조사할 수 없음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정의되어 있는 세부항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조사 시 어려움이 있음
 - 스포츠의류, 경기용 신발, 스포츠용 자전거, 흥행장용품 등의 기준, 골프용, 기타 운동용 가방, 스포츠오락용 기계, 바둑 및 장기 등의 포함 여부 등 구분이 곤란
- 스포츠산업분류의 명확한 재설정 필요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스포츠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세세분류는 스포츠산업 세분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조사기준과 기업체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총량 추정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추후 조사 시 조사범위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 정부기관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 수수료를 사업실적으로 조사
 -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스포츠토토의 경우 각각 부산광역시, 창원시,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사업자로 기업회계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사업실적임
- 2012년 기준조사에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참고사항으로만 활용 가능
 - 표본설계 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않음
 - 표본추출 과다 혹은 과소에 따라 조사결과에 변동이 있어 추정된 값의 정확성이 떨어짐
 - 비법인단체의 경우 모집단에 비해 표본수가 적게 추출
 - 조사과정에서 표본대체를 함에 있어 스포츠산업 중분류를 감안하여 표본대체하고 조직형태별은 고려하지 않음
 - 조사과정에서 조직형태가 변경됨(비법인단체 ↔ 회사이외법인, 국가지자체)
- 2012년 기준조사의 유용성
 - 스포츠산업관련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유지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 적용
 -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는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확대하여 진행(2011년 기준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

- 모집단 보완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잠정)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65개 산업세세분류 중 38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사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스포츠산업분류 간 포괄범위가 다른 38개 중 아래 36개 산업세세분류*에 속한 170,779개 사업체 (2개는 본사조사 대상으로 별도 보완**)
 - * 91292, 41226, 41229, 33309, 31991, 33302, 33999, 25200, 14191, 13224, 13229, 14199, 15129, 15219, 15220, 46463, 46465, 46413, 46491, 46420, 47640, 47632, 47416, 47430, 47420, 47993, 69210, 73901, 73903, 71531, 91199, 58122, 60222, 63991, 85611, 58211, 58219, 75211
 - ** 91241, 91249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복권발행업, 스키장운영업 등 사업체 개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2011년 기준조사와는 동일하게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실행

Ⅱ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1 사업체 수

1.1 모집단 사업체

- 본 조사는 201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준으로 추출한 모집단 총 84,246개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2011년 기준조사까지는 15개 중분류(45개 세세분류)로 구축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이하 구분류)로 진행이 되었으며, 금번 2012년 기준조사에서는 20개 중분류(65개 세세분류)로 새로이 구축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 (이하 신분류)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과거자료와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구분류체계로 분석하여 과거자료와 비교분석하고, 금번 조사된 신분류체계로도 분석하여 작성함
- 구분류 기준으로는 2011년 기준조사 69,027개보다 201개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사업체 수는 증가하는 반면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은 감소 추세에 있음

<표 II-1> '09 ~ '11년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구분류 기준)

(단위 : 개)

구분	모집단 사업체수			
	2009년 기준	2010년 기준	2011년 기준	2012년 기준
전 체	62,184	69,315	69,027	68,826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5,050	4,813	4,696	3,577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8,856	34,207	33,576	34,15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9,262	9,991	10,864	10,79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016	20,304	19,891	2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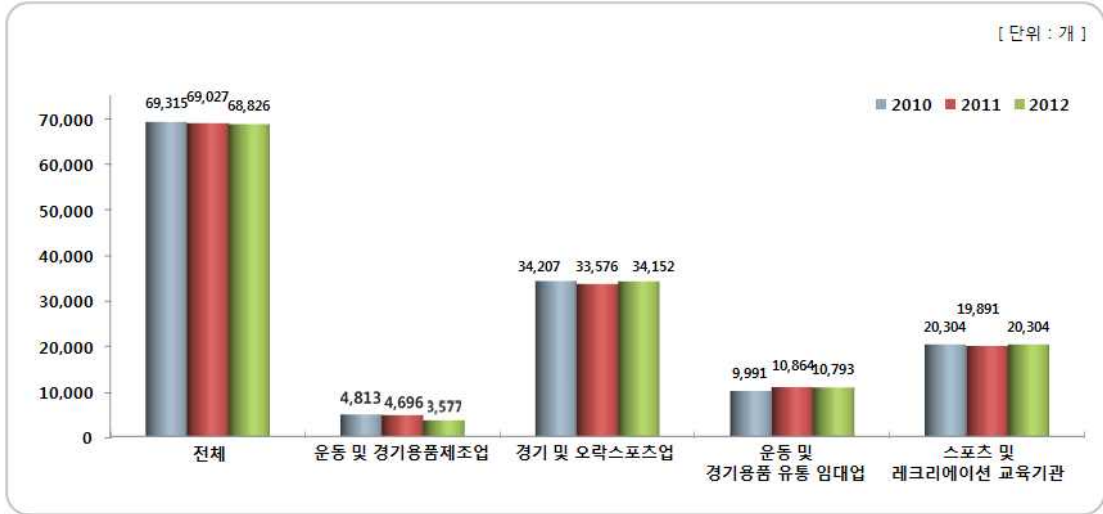


그림 II-1 10~12년 기준 모집단수 비교 (구분류기준)

<표 II-2> '10 ~ '12년 15개 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구분류 기준)

(단위 : 개, %)

대분류	중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4	0.0	3	0.0	0	0.0
	섬유제품 및 의복제조업	3,071	4.4	2,898	4.2	1,967	2.9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19	1.3	956	1.4	857	1.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819	1.2	839	1.2	753	1.1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181	0.3	193	0.3	170	0.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24	0.6	441	0.6	416	0.6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26	0.5	353	0.5	382	0.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2,001	46.1	31,350	45.4	31,959	46.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205	1.7	1,169	1.7	1,162	1.7
	갬블링 및 베팅업	53	0.1	52	0.1	55	0.1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7	0.1	18	0.0	8	0.0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071	1.5	1,260	1.9	1,246	1.8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8,186	11.8	8,688	12.6	8,781	12.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734	1.1	916	1.3	766	1.1
스포츠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0,304	29.3	19,891	28.8	20,304	29.5
합계		69,315	100	69,027	100	68,826	100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의 경우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에서 제외됨

○ 2012년 신분류가 적용된 전체 스포츠산업 사업체수는 총 84,246개로 추정되었으며, 세세분류별로는 스포츠 교육기관이 2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3> '12년 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신분류 기준)

(단위 : 개, %)

구분			모집단 사업체수	
			사업체수	비중
전 체			84,246	100.0
스포츠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89	0.1
		실외 경기장 운영업	66	0.1
		경주장 운영업	15	0.0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596	0.7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4,995	5.9
		수영장 운영업	199	0.2
		볼링장 운영업	534	0.6
		당구장 운영업	16,351	19.4
		골프연습장 운영업	7,139	8.5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201	0.2
		체육공원 운영업	44	0.1
		기원 운영업	1,208	1.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362
	스키장 운영업		20	0.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698	0.8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464	0.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900	2.3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384	0.5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147	0.2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245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84	0.2
자전거 제조업			10	0.0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259	0.3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25	0.0
스포츠 응원용품업			15	0.0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5	0.0

구분			모집단 사업체수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1,340	1.6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407	0.5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83	0.1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137	0.2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가방 제조업	220	0.3
		스포츠 신발 제조업	168	0.2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469	0.6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294	1.5
		자전거 도매업	156	0.2
		스포츠 의류 도매업	596	0.7
		스포츠 가방 도매업	24	0.0
		스포츠 신발 도매업	61	0.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9,197	10.9
		자전거 소매업	2,683	3.2
		스포츠 의류 소매업	7,807	9.3
		스포츠 가방 소매업	65	0.1
		스포츠 신발 소매업	212	0.3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263	0.3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766	0.9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42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	0.0
		기타 베팅업	54	0.1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8	0.0
		회원권 대행 판매업	113	0.1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14	0.0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374	0.4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신문 발행업	13	0.0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40	0.0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3	0.0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2	0.0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1	0.0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4	0.0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17,695	21.0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2,609	3.1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7	0.0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6	0.0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1,127	1.4

○ 2012년 신분류가 적용된 20개 중분류별 사업체수는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스포츠 교육기관 24.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이 24.0% 등의 순으로 추정됨

<표 II-4> '12년 20개 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신분류 기준)

(단위 : 개, %)

대분류	중분류	2012년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170	0.2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31,267	37.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82	0.5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1,162	1.4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1,900	2.3
	스포츠건설업	531	0.6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753	0.9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1,967	2.4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857	1.0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131	2.5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0,227	24.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766	0.9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업	42	0.0
	스포츠 베팅업	55	0.1
	스포츠 마케팅업	509	0.6
	스포츠 미디어업	59	0.1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14	0.0
	스포츠 교육기관	20,304	24.1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23	0.0
	스포츠 여행업	1,127	1.3
합계		84,246	100

1.2 설립년도

- 스포츠산업 사업체의 설립년도(구분류기준)의 비율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사업체가 전체 45.7%로 2011년 기준조사 63.6%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다른 설립년도의 비율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산업 사업체의 설립년도(신분류기준)의 비율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사업체가 전체 4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5> '11 ~ '12년 설립년도 비율

(단위 : 천개, %)

구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2011년	사업체 수	43.9	14.5	4.8	3.0	2.7	
	비중	63.6	21.1	7.0	4.4	3.9	
2012년	구분류	사업체 수	31.4	16.2	10.7	6	4.4
		비중	45.7	23.6	15.6	8.7	6.4
	신분류	사업체 수	37.2	20.6	13.9	7	5.4
		비중	44.2	24.5	16.5	8.3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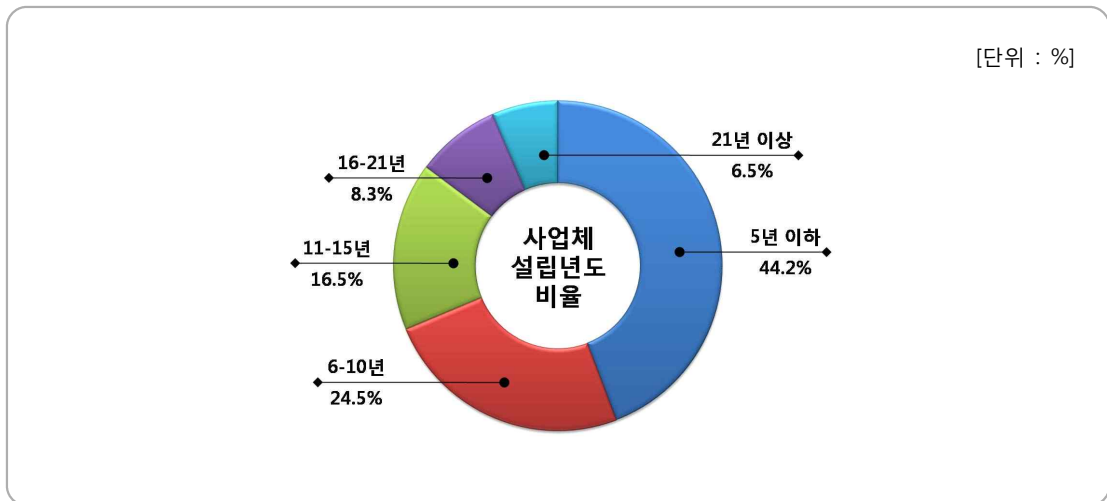


그림 II-2 '12 설립년도 비율

1.3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표 II-6> '12년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개인사업체	스포츠 시설업	32,560	38.7
	스포츠 용품업	23,167	27.6
	스포츠 서비스업	20,228	24.0
회사법인	스포츠 시설업	1,771	2.1
	스포츠 용품업	3,485	4.1
	스포츠 서비스업	1,182	1.4
회사이외 법인	스포츠 시설업	321	0.4
	스포츠 용품업	30	0.0
	스포츠 서비스업	294	0.3
비법인단체	스포츠 시설업	299	0.4
	스포츠 용품업	8	0.0
	스포츠 서비스업	359	0.4
국가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시설업	461	0.5
	스포츠 용품업	11	0.0
	스포츠 서비스업	70	0.1
합계		84,246	100

- 신분류기준으로도 개인사업체가 스포츠산업 전체 사업체 중 90.2%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이며, 다음으로 회사법인이 7.6%를 점유한 것으로 여전히 소규모 영세한 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표 II-7>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비중
개인사업체	75,954	90.2
회사법인	6,438	7.6
회사이외 법인	645	0.8
비법인단체	667	0.8
국가지방자치단체	542	0.6
합계	84,2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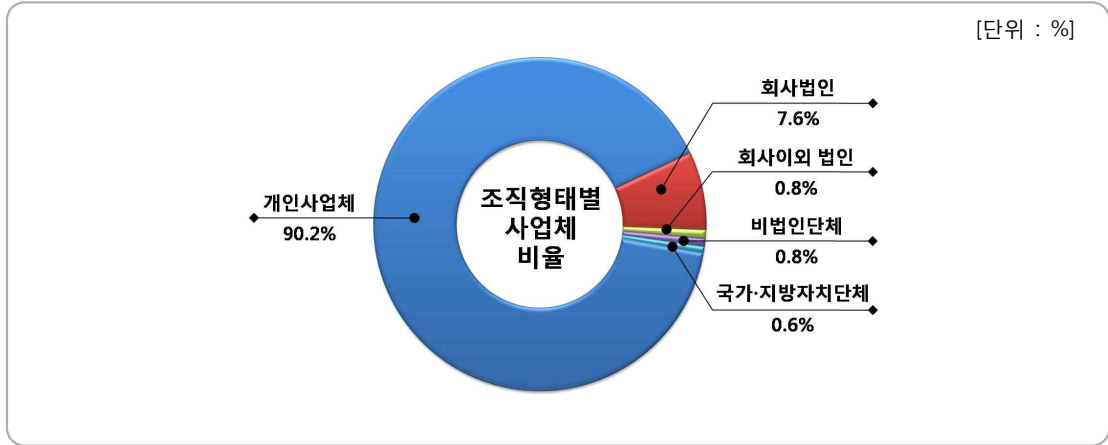


그림 II-3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율 (신분류기준)

1.4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표 II-8> '10 ~ '12년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대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1~4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2,896	4.2	2,450	3.6	1,393	2.0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29,950	43.2	29,912	43.3	30,440	44.2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9,213	13.3	10,040	14.6	9,913	14.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69	28.7	19,441	28.2	19,646	28.6
5~9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1,041	1.5	1,306	1.9	1,121	1.6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2,422	3.5	1,940	2.8	1,988	2.9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515	0.7	618	0.9	599	0.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33	0.6	368	0.5	556	0.8
10~19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509	0.7	535	0.8	745	1.1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982	1.3	771	1.1	832	1.2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01	0.2	150	0.2	176	0.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	77	0.1	96	0.1
20~49명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291	0.4	320	0.5	240	0.3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	524	0.8	623	0.9	524	0.8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30	0.2	34	0.0	69	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	0.0	4	0.0	4	0.0
50명이상	운동·경기용품제조업	76	0.1	84	0.1	78	0.1
	경기·오락서비스업	329	0.5	331	0.5	368	0.5
	운동·경기용품유통업	32	0.1	22	0.0	36	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	1	0.0	2	0.0
합 계		69,315	100	69,027	100	68,826	100



- 구분류기준으로는 종사자 수가 1~4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 89.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으로 5~9인 사업체가 6.2%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95.4%를 차지하고 있음
- 20인 이상 사업체는 단 1.9%에 불과해 대부분의 스포츠산업체가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9> '10 ~ '12년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1~4명	61,928	89.3	61,843	89.6	61,392	89.2
5~9명	4,410	6.4	4,232	6.1	4,264	6.2
10~19명	1,593	2.3	1,533	2.2	1,849	2.7
20~49명	947	1.4	981	1.5	837	1.2
50명 이상	437	0.6	438	0.6	484	0.7
합 계	69,315	100	69,027	100	68,826	100

<표 II-10> '12년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신분류기준)

(단위 : 개, %)

구 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1~4명	스포츠 시설업	31,586	37.5
	스포츠 용품업	21,666	25.7
	스포츠 서비스업	20,875	24.8
5~9명	스포츠 시설업	2,145	2.6
	스포츠 용품업	3,211	3.8
	스포츠 서비스업	773	0.9
10~19명	스포츠 시설업	848	1.0
	스포츠 용품업	1,194	1.5
	스포츠 서비스업	261	0.3
20~49명	스포츠 시설업	512	0.6
	스포츠 용품업	454	0.5
	스포츠 서비스업	101	0.1
50명이상	스포츠 시설업	321	0.4
	스포츠 용품업	176	0.2
	스포츠 서비스업	123	0.1
합 계		84,246	100

- 신분류기준으로도 종사자 수가 1~4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 88.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으로 5~9인 사업체가 7.3%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95.3%를 차지하고 있음
- 20인 이상 사업체는 단 1.9%에 불과해 대부분의 스포츠산업체가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11>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비중
1~4명	74,128	88.0
5~9명	6,129	7.3
10~19명	2,303	2.7
20~49명	1,066	1.3
50명 이상	620	0.7
합계	84,2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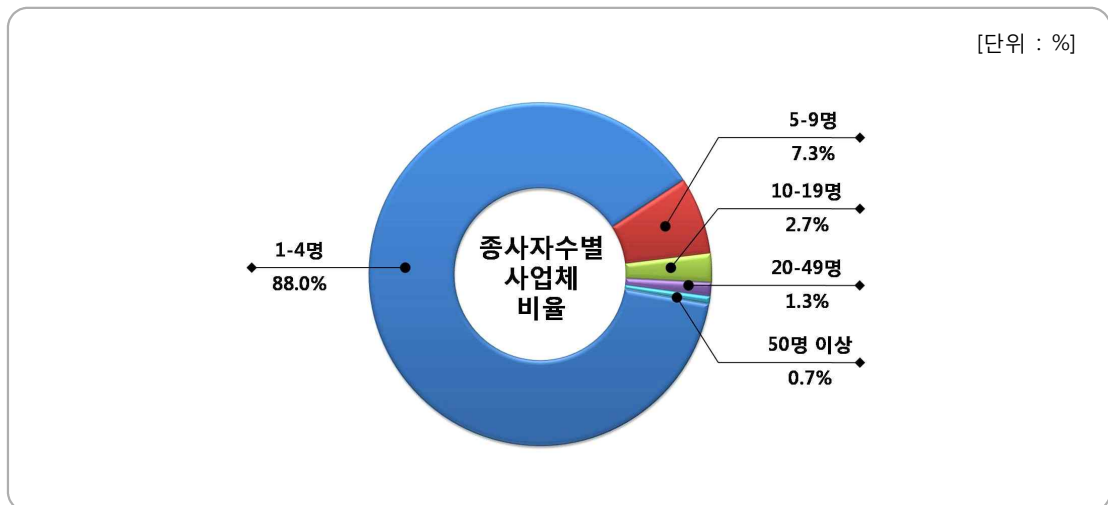


그림 II-4 종사자 수별 사업체 비율

1.5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 구분류기준으로 사업종류별 사업체수는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인 경기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갠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업체가 전체의 4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은 29.5%, 유통임대업이 15.7%를 점유하고 있음
- 특히 기타스포츠 시설운영업(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전체 스포츠산업체 중 46.4%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12> '10 ~ '12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4,813	6.9	4,695	6.8	3,577	5.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4,207	49.4	33,577	48.7	34,152	49.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9,991	14.4	10,864	15.7	10,793	15.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0,304	29.3	19,891	28.8	20,304	29.5
합계	69,315	100	69,027	100.0	68,826	100

- 신분류기준으로 사업종류별 사업체수는 경기장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운영업(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기원 등),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수상스포츠 시설운영업 등의 사업체가 포함된 스포츠 시설업이 전체의 42.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스포츠 용품업(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유통 및 임대업)은 31.7%, 스포츠서비스업(경기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교육기관 등)이 26.3%를 점유하고 있음

<표 II-13> '12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신분류 기준)

(단위 : 개, %)

구분	사업체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35,412	42.0
스포츠 용품업	26,701	31.7
스포츠 서비스업	22,133	26.3
합계	84,2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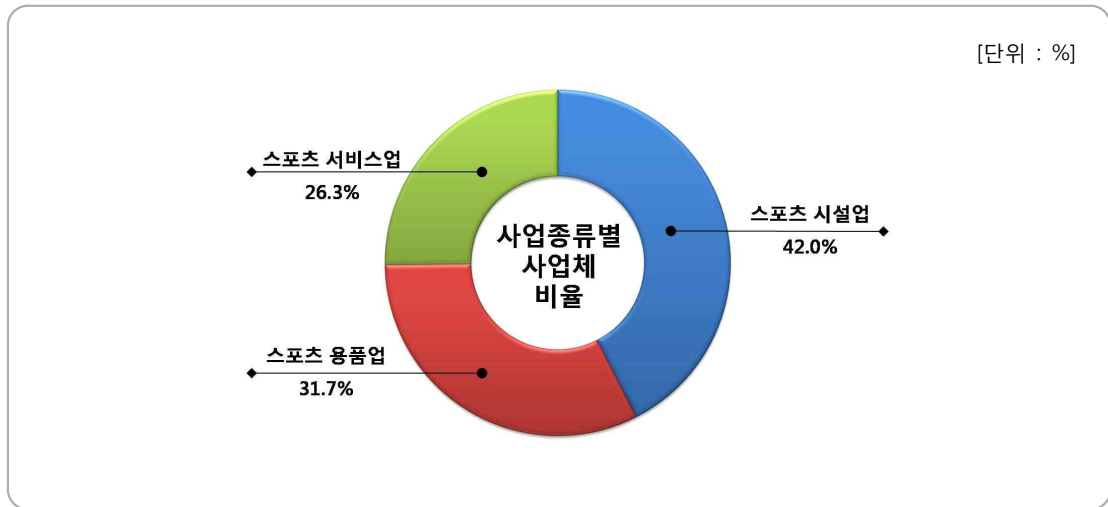


그림 II-5 '12년 사업종류별 사업체 비율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1 총 관

1.1 2012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요약

-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요약하면 스포츠산업 사업체수를 구분류기준으로 추정하면 6만 8,826개,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8조 691십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37조 688십억원, 수출이 1조 3십억원으로 각각 조사됨
 -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대비 201개 줄어든 6만 8,826개로 추정되었음
 - 아울러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20개 업종이 추가된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조사됨. 이에 따른 사업체수를 신분류기준으로 추정하면 8만 4,246개,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57조 479십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56조 309십억원, 수출이 1조 170십억원으로 각각 조사됨
- 스포츠산업 종사자수(구분류기준)은 24만 2천명으로 2011년 대비 종사자수가 6,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신분류기준의 종사자수는 34만 2천명으로 구분류기준보다 10만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구분류기준) 38조 691십억원 중 영업비용 37조 688십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3조 493십억으로 9.0%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신분류기준으로 매출액은 57조 479십억원 중 영업비용 56조 309십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4조 203십억으로 7.3%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III-1> '09 ~ '12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구분		업체수 (개)	종사자 (천명)	매출액 (십억원)	내수 (십억원)	수출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2012년 기준	신분류	84,246	342	57,479	56,309	1,170	4,203
	구분류	68,826	242	38,691	37,688	1,003	3,493
2011년 기준		69,027	236	36,513	35,234	1,279	2,958
2010년 기준		69,315	234	34,482	32,627	1,855	3,930
2009년 기준		62,184	210	33,456	32,575	874	4,994

2 매출액

2.1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구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전체 60.8%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임대업이 18.9%,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이 17.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3.1%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동 업종에 경륜, 경쟁, 경마 및 스포츠복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보다 약 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Ⅲ-2> '11 ~ '12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구분류 기준) (단위 : 억원, %)

대분류	중분류	2011년		2012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552(3.9)	0.7	-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40,050(60.1)	11.0	35,844(53.9)	9.2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603(14.4)	2.6	10,713(16.1)	2.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4,403(21.6)	3.9	19,972(30.0)	5.2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6,608(100)	(18.2)	66,529(100)	(17.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38,043(17.3)	10.4	31,730(13.5)	8.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4,913(6.8)	4.1	15,393(6.5)	4.0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5,667(16.3)	9.8	33,839(14.4)	8.7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3,309(15.3)	9.1	33,688(14.3)	8.7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51(0.3)	0.2	659(0.3)	0.2
	캠핑 및 베틀업	96,300(43.9)	26.4	119,477(50.9)	30.9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0.1)	0.1	309(0.1)	0.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9,274(100)	(60.1)	235,095(100)	(60.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2,591(60.8)	11.7	43,073(58.7)	11.1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6,781(38.3)	7.3	29,596(40.4)	7.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607(0.9)	0.2	639(0.9)	0.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69,979(100)	(19.2)	73,308(100)	(18.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6(100.0)	2.5	11,976(100.0)	3.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6(100.0)	(2.5)	11,976(100)	(3.1)
총합계		365,127	100.0	386,908	100.0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의 경우 신분류에서는 제외됨

-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타 스포츠 베틀업의 매출이 전체 20.5%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스포츠 의류 소매업이 9.8%,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이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3> '12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신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비중	
전 체		57,479	100.0	
스포츠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85	0.1
		실외 경기장 운영업	178	0.3
		경주장 운영업	2,910	5.1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153	2.0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525	0.9
		수영장 운영업	132	0.2
		볼링장 운영업	85	0.1
		당구장 운영업	320	0.6
		골프연습장 운영업	932	1.6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9	0.0
		체육공원 운영업	60	0.1
		기원 운영업*	25	0.0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2,967
	스키장 운영업		416	0.7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25	0.0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40	0.1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50	0.3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995	1.7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962	1.7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581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444	0.8
자전거 제조업			43	0.1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614	1.1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60	0.1
스포츠 응원용품업*			9	0.0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48	0.4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3,159	5.5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328	0.6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61	0.1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37	0.1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가방 제조업	220	0.4
		스포츠 신발 제조업	276	0.5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576	1.0

구분		매출액	비중	
스포츠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269	7.4
		자전거 도매업	278	0.5
		스포츠 의류 도매업*	2,660	4.6
		스포츠 가방 도매업*	41	0.1
		스포츠 신발 도매업*	1,593	2.8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131	5.5
		자전거 소매업	332	0.6
		스포츠 의류 소매업*	5,623	9.8
		스포츠 가방 소매업*	19	0.0
		스포츠 신발 소매업*	168	0.3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2,403	4.2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64	0.1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715	1.2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89	0.3
		기타 스포츠 베팅업	11,759	20.5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31	0.1
회원권 대행 판매업*		184	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15	0.0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825	1.4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신문 발행업*	170	0.3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3	0.0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120	0.2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53	0.1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143	0.2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8	0.1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1,055	1.8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143	0.2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875	3.3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49	0.1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886	1.6	

* 신설업종

- 매출액 비중의 변화(구분류기준)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2011년에 비해 29.2% 증가하였으며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7.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4.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기불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됨

<표 III-4> '10 ~ '12년 사업종류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비중)			증감률 (2011년 대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6,018 (17.4)	6,661(18.2)	6,653(17.2)	-0.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211 (61.5)	21,927(60.1)	23,509(60.8)	7.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6,328(18.4)	6,998(19.2)	7,331(18.9)	4.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5 (2.7)	927(2.5)	1,198(3.1)	29.2
합 계	34,482(100)	36,513(100)	38,691(100)	6.0

- 신분류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을 포함하는 스포츠 용품업이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5> '12년 사업종류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도	
	매출액	비중
스포츠 시설업	11,973	20.8
스포츠 용품업	27,233	47.4
스포츠 서비스업	18,273	31.8
합 계	57,4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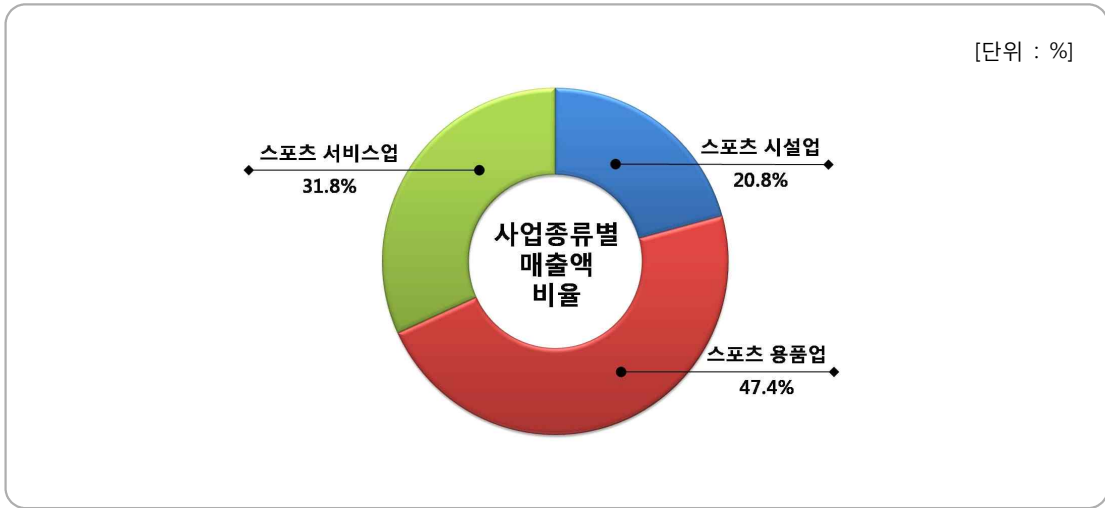


그림 Ⅲ-1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율(2012년)

2.2 조직형태별 매출액 현황³⁾

- 조직형태별 매출액(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회사법인이 51.1%, 회사이의 법인이 24.0%, 개인사업체는 21.2%로 스포츠산업 전체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6> 2012년 조직형태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2년도	
	매출액	비중
개인사업체	12,143	21.2
회사법인	29,386	51.1
회사이의 법인	13,782	24.0
비법인단체	1,166	2.0
국가지방자치단체	1,002	1.7
합 계	57,479	100

3) 2012년 기준조사에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표본설계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법인 단체의 경우 모집단에 비해 표본수가 적게 추출되어 추정 값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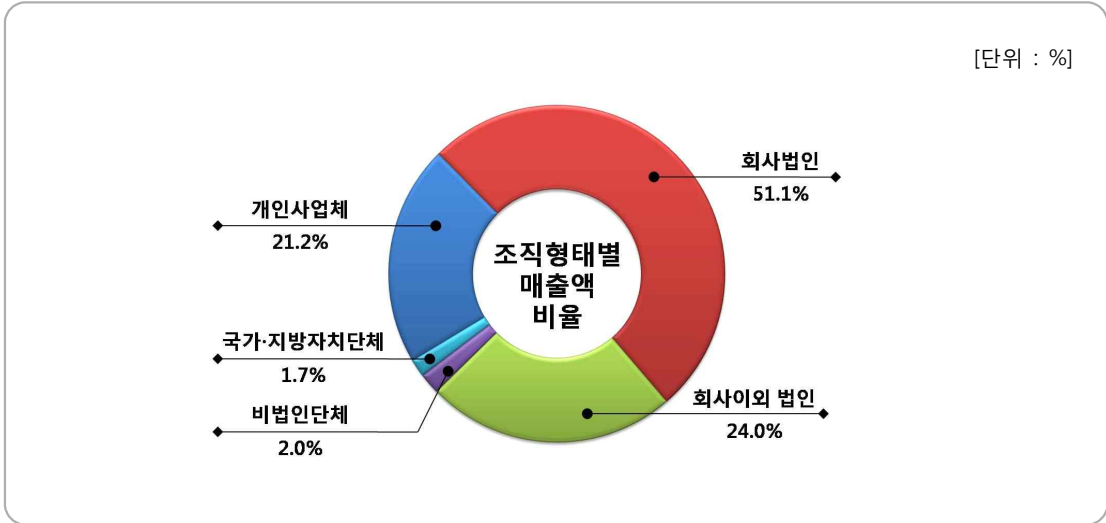


그림 III-2 조직형태별 매출액 비율(2012년)

2.3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구분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이상의 사업체 매출액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산업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규모가 1~4인 사업체수가 89.2%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16.5%에 그치고 있어 소규모 업체의 유고발생, 지속적 성장의 한계 등 전년도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지속적 성장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Ⅲ-7> '10 ~ '12년 종사자수별 매출액 (구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비중)			증감률 (2011년 대비)
	2010년	2011년	2012년	
1~4명	5,101(14.8)	5,071(14.0)	6,402(16.5)	26.2
5~9명	2,217(6.4)	2,468(6.8)	2,720(7.0)	10.2
10~19명	2,118(6.1)	2,592(7.2)	2,997(7.7)	15.6
20~49명	4,993(14.5)	4,690(13.0)	6,635(17.1)	41.5
50명 이상	20,053(58.2)	21,692(59.0)	19,937(51.5)	-8.1
합계	34,482(100)	36,513(100)	38,691(100)	6.0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신분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이상의 사업체 매출액이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분류기준과 유사하게 종사자 규모가 1~4인 사업체수가 8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신분류기준)은 19.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8> 2012년 종사자수별 매출액(신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도	
	매출액	비중
1~4명	11,027	19.2
5~9명	4,929	8.6
10~19명	4,284	7.5
20~49명	8,329	14.5
50명 이상	28,910	50.3
합계	57,4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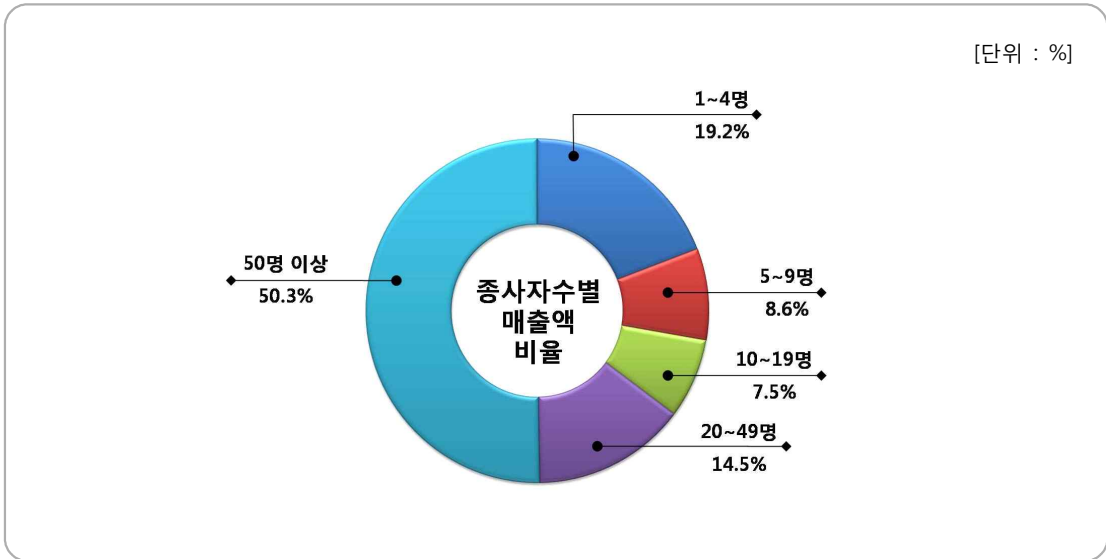


그림 III-3 종사자수별 매출액 비율(2012년)

3 종사자수

3.1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

-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구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종사자수의 경우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의 비율이 6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은 구멍자켓, 구멍벨트, 스포츠의류 제조 및 부분품으로 의류 제조 및 부분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66.8%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경우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의 종사자

비율이 64.3%로 가장 높게 조사됨

<표 Ⅲ-9> '11 ~ '12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구분류 기준) (단위 : 백명, %)

대분류	중분류	2011년		2012년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9(2.3)	0.4	-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232(60.4)	9.8	235(62.4)	9.7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2(18.8)	3.1	71(18.8)	2.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71(18.5)	3.0	71(18.8)	2.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84(100)	16.3	377(100)	15.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71(5.4)	3.0	73(5.4)	3.0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2(3.2)	1.8	43(3.1)	1.8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6(17.8)	10	240(17.5)	9.9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81(66.3)	37.3	914(66.8)	37.7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34(2.6)	1.4	35(2.6)	1.4
	캠블링 및 베팅업	61(4.6)	2.6	62(4.5)	2.6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1)	0.0	1(0.1)	0.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26(100)	56.1	1,368(100)	56.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76(27.1)	3.2	77(26.4)	3.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177(63.3)	7.6	187(64.3)	7.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27(9.6)	1.1	27(9.3)	1.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280(100)	11.9	291(100)	1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0(100.0)	15.7	387(100.0)	16.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0(100.0)	15.7	387(100)	16.0
총합계		2,360	100.0	2,423	100.0

- 구분류기준으로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4만 2천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산업 종사자 44만 6천명(2009년 기준)에 약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종류별 종사자수는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이 13만 6천 8백명, 5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사업에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2012년 기준 조사에서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이

Ⅲ
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
결과

제외되어 종사자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 '10 ~ '12년 사업종류별 종사자수(구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종사자수 (비중)			증감률 (2011년 대비)
	2010년도	2011년	2012년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36 (15.4)	38(16.1)	38(15.6)	0.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2 (56.4)	133(56.4)	136(56.4)	3.0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29 (12.4)	28(11.9)	29(12.0)	3.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 (15.8)	37(15.6)	39(16.0)	5.4
합 계	234 (100)	236(100)	242(100)	2.5

- 신분류기준으로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총 34만 2천 4백명으로 나타남. 세세분류 산업으로는 스포츠 의류 소매업이 3만7천명으로 전체 산업의 10.8%로 가장 많은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1> '12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신분류 기준)

(단위 : 백명, %)

구분		종사자수	비중	
전 체		3,424	100.0	
스포츠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8	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17	0.5
		경주장 운영업	47	1.4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44	4.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72	5.0
		수영장 운영업	27	0.8
		볼링장 운영업	53	1.5
		당구장 운영업	263	7.7
		골프연습장 운영업	205	6.0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5	0.1
		체육공원 운영업	6	0.2
		기원 운영업*	14	0.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178	5.2
		스키장 운영업	62	1.8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13	0.4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22	0.6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8	1.1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35	1.0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27	0.8

구분		종사자수	비중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19	0.5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7	0.5
		자전거 제조업	1	0.0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26	0.8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2	0.1
		스포츠 응원용품업*	1	0.0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	0.1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190	5.6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29	0.8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8	0.2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8	0.2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가방 제조업	13	0.4
		스포츠 신발 제조업	20	0.6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38	1.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76	2.3
		자전거 도매업	10	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62	1.8
		스포츠 가방 도매업	2	0.1
		스포츠 신발 도매업	10	0.3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213	6.3
		자전거 소매업	31	0.9
		스포츠 의류 소매업	370	10.8
		스포츠 가방 소매업	2	0.1
		스포츠 신발 소매업	11	0.3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37	1.1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27	0.8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9	0.3
스포츠 베틀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3	0.1	
	기타 베틀업	59	1.7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1	0.0
		회원권 대행 판매업*	8	0.2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9	0.3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34	1.0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신문 발행업*	6	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	0.1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13	0.4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1	0.0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	0.1		

구분		종사자수	비중	
스포츠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	0.1
	스포츠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339	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49	1.4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4	1.6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	0.1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260	7.6	

* 신설업종

-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경기장 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스포츠 건설업이 포함된 스포츠 시설업이 13만 4천명으로 전체 산업의 39.1%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음

<표 Ⅲ-12> 2012년 사업종류별 종사자수(신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도	
	종사자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134	39.1
스포츠 용품업	123	36.0
스포츠 서비스업	85	24.9
합 계	3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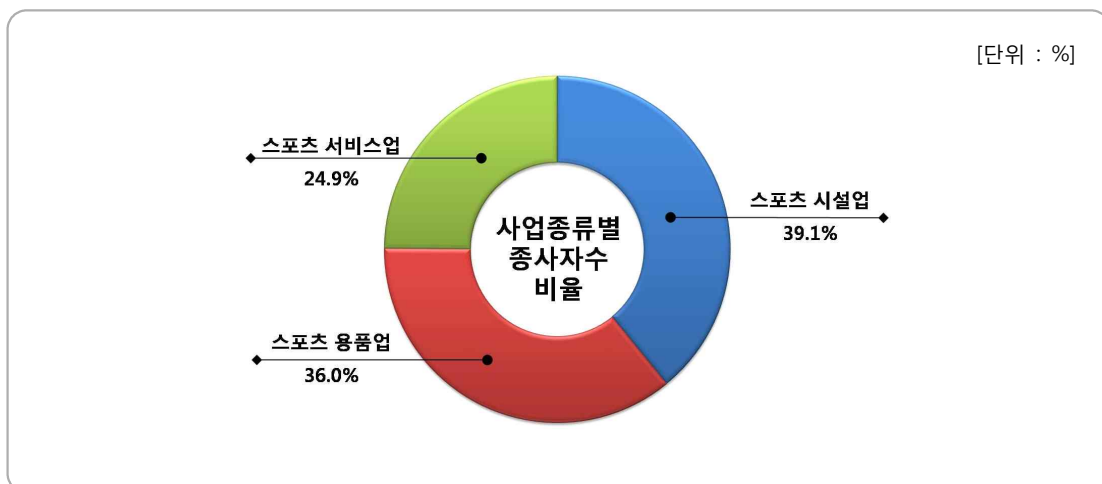


그림 Ⅲ-4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비율(2012년)

3.2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현황⁴⁾

- 조직형태별 종사자수(신분류기준)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17만 2천명으로 전체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회사법인이 40.6%, 회사이외 법인이 4.7% 순으로 각각 조사됨

<표 III-13> 2012년 조직형태별 종사자수(신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도	
	종사자수	비중
개인사업체	172	50.3
회사법인	139	40.6
회사이외 법인	16	4.7
비법인단체	6	1.8
국가지방자치단체	9	2.6
합계	3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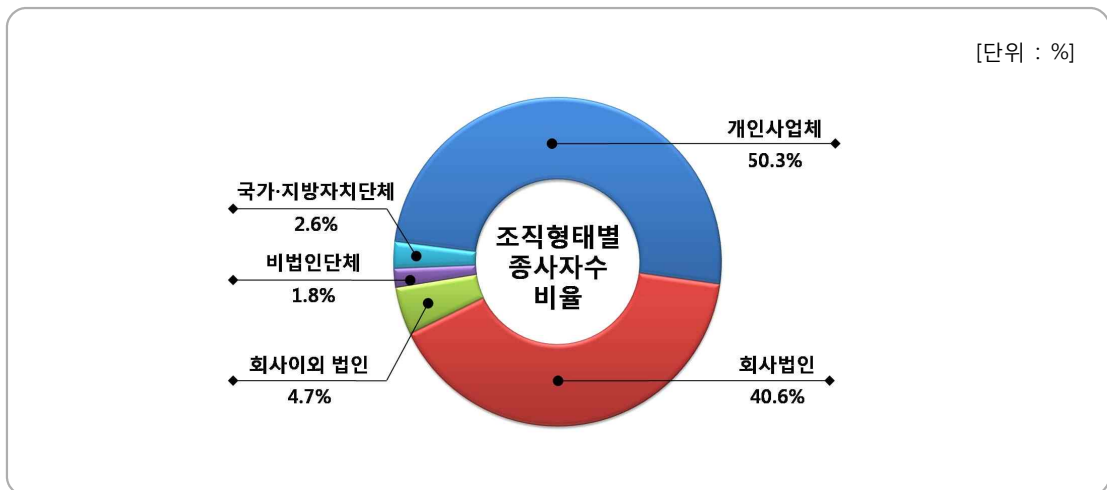


그림 III-5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비율(2012년)

4) 2012년 기준조사에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표본설계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법인 단체의 경우 모집단에 비해 표본수가 적게 추출되어 추정 값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함

3.3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구분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1~4인 사업체수에 종사하는 인원이 10만 5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0명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5만 9천명, 2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14> 종사자 수별 종사자(구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종사자 (비중)			증감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1~4명	109 (46.5)	111(47.0)	105(43.4)	-5.4
5~9명	27 (11.5)	27(11.4)	27(11.2)	0.0
10~19명	21 (9.0)	20(8.5)	25(10.3)	25.0
20~49명	28 (12.0)	29(12.3)	26(10.7)	-10.3
50명 이상	49 (20.9)	49(20.8)	59(24.4)	20.4
합 계	234 (100.0)	236(100)	242(100)	2.5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신분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1~4인 사업체수에 종사하는 인원이 13만 4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0명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10만 6천명, 3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15> 2012년 종사자수별 종사자(신분류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도	
	종사자수	비중
1~4명	134	39.2
5~9명	38	11.1
10~19명	31	9.1
20~49명	33	9.6
50명 이상	106	31.0
합 계	3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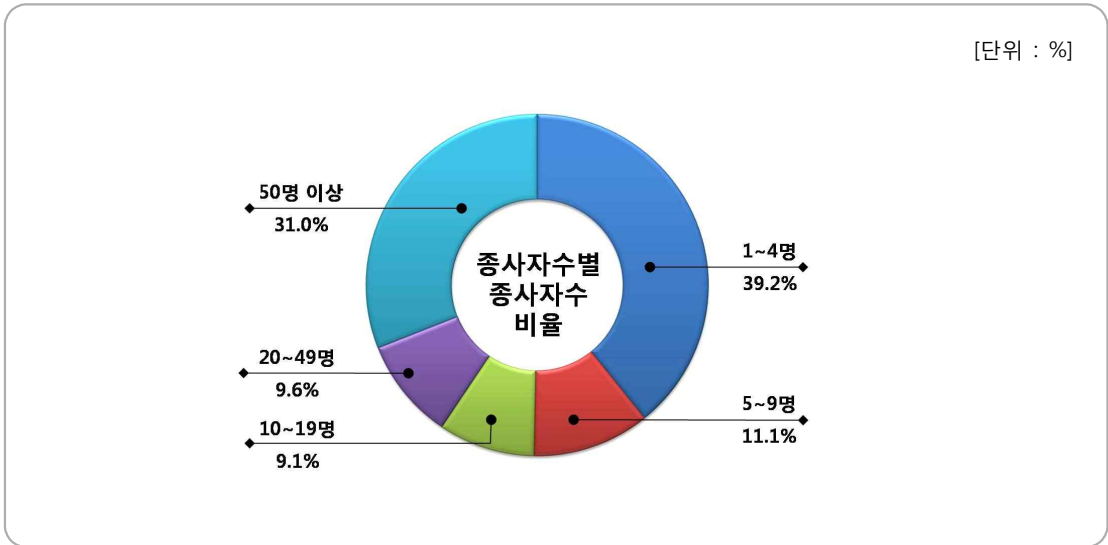


그림 III-6 종사자 수별 종사자수 비율(2012년)

4 사업실적

4.1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 스포츠산업 매출액(구분류기준)은 38조 691십억원으로 영업비용 35조 198십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3조 493십억원으로 9.0%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7.4%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 구조를 지니고는 있음
- 수출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 투자 등과 동시에 프로스포츠 및 생활스포츠 등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체 스포츠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표 Ⅲ-16> '11 ~ '12년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및 비중(구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

대분류	중분류	2011년						2012년					
		내수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내수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53	0.7	236	0.7	20	0.7	-	-	-	-	-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3,698	10.5	3,635	11.0	370	12.5	3,458	9.2	3,230	9.2	355	10.2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46	2.1	907	2.7	53	1.8	798	2.1	958	2.7	113	3.2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919	2.6	1,349	4.0	91	3.1	1,865	4.9	1,716	4.9	281	8.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요약		5,616	15.9	6,127	18.4	534	18.1	6,121	16.2	5,904	16.8	749	21.4
2	경기장 운영업	3,804	10.8	3,672	11.1	133	4.5	3,173	8.4	2,968	8.4	205	5.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486	4.2	1,107	3.3	23	0.8	1,539	4.1	1,481	4.2	58	1.7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567	10.2	3,413	10.3	154	5.2	3,384	9.0	3,150	8.9	234	6.7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331	9.5	2,923	8.8	408	13.7	3,331	8.8	2,803	8.0	566	16.2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5	0.2	61	0.2	14	0.5	66	0.2	51	0.1	14	0.4
	캠블링 및 베팅업	9,630	27.3	8,967	27.0	663	22.4	11,948	31.7	11,162	31.7	786	22.5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	0.1	27	0.1	2	0.1	31	0.1	28	0.1	3	0.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요약		21,922	62.3	20,170	60.8	1,397	47.2	23,472	62.3	21,643	61.4	1,866	53.5
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030	11.4	3,821	11.5	438	14.8	3,873	10.3	3,929	11.2	378	10.8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678	7.6	2,376	7.2	302	10.2	2,960	7.9	2,637	7.5	323	9.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임대업	61	0.2	49	0.1	12	0.4	64	0.2	55	0.2	9	0.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요약		6,769	19.2	6,246	18.8	752	25.4	6,897	18.4	6,621	18.9	710	20.3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7	2.6	652	2.0	275	9.3	1,198	3.2	1,030	2.9	168	4.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요약		927	2.6	652	2.0	275	9.3	1,198	3.2	1,030	2.9	168	4.8
총합계		35,234	100.0	33,195	100.0	2,958	100.0	37,688	100.0	35,198	100.0	3,493	100.0

1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4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2012년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제외

- 스포츠산업 매출액(신분류기준)은 57조 479십억원으로 영업비용 53조 276십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4조 203십억원으로 7.3%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7.9%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 구조를 지니고는 있음

<표 II-17> '12년 20개 중분류별 실적 현황

(단위 : 십억원, %)

대분류	중분류	내수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3,173	5.6	2,968	5.6	205	4.9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3,206	5.7	2,736	5.1	507	12.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384	6.0	3,150	5.9	234	5.6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66	0.1	51	0.1	14	0.3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150	0.3	82	0.2	68	1.6
	스포츠 건설업	1,957	3.5	1,849	3.5	108	2.6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865	3.3	1,716	3.2	281	6.7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3,458	6.1	3,231	6.1	355	8.4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798	1.4	958	1.8	113	2.7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8,252	14.7	8,016	15.0	826	19.6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11,669	20.7	11,182	21.0	492	11.7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64	0.1	55	0.1	9	0.2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업	715	1.3	688	1.3	27	0.6
	스포츠 베팅업	11,948	21.2	11,162	21.0	786	18.7
	스포츠 마케팅업	1,055	1.9	1,027	1.9	28	0.7
	스포츠 미디어업	509	0.9	517	1.0	-8	-0.2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8	0.1	31	0.1	7	0.2
	스포츠 교육기관	1,198	2.1	1,030	1.9	168	4.0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918	3.4	2,008	3.7	-84	-2.0
	스포츠 여행업	886	1.6	819	1.5	67	1.6
합계		56,309	100	53,276	100	4,203	100

- 스포츠산업 사업실적(구분류기준)은 2011년 대비 매출액 규모는 6.0% 증가하였고, 특히 수출은 21.6% 감소하였음
- 영업이익 측면에서 전년대비 18.1%의 증가하여 기업들의 고용확대와 투자 등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사료됨

<표 Ⅲ-18> '09 ~ '12년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A)	내수	수출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B)/(A)
2009년도		33,456	32,582	874	28,131	4,994	14.9
2010년도		34,482	32,627	1,855	29,637	3,930	11.4
2011년도		36,513	35,234	1,279	33,195	2,958	8.1
2012년도	구분류	38,691	37,688	1,003	35,198	3,493	9.0
	신분류	57,479	56,309	1,170	53,276	4,203	7.3
전년대비 증감률		6.0	7.0	-21.6	6.0	18.1	11.1

- 스포츠산업 사업실적(신분류기준)은 수출이 1조 170십억원으로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익률은 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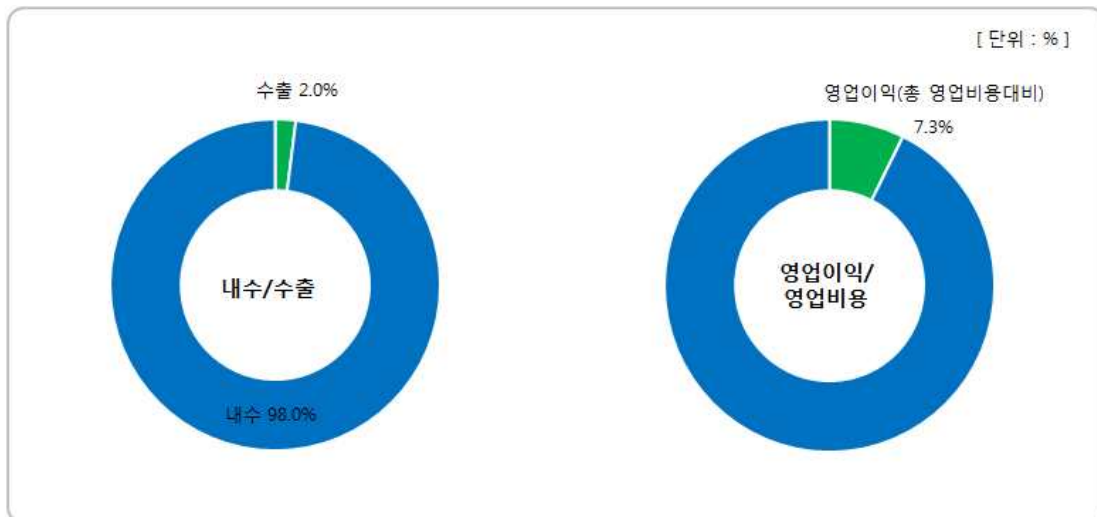


그림 Ⅲ-7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비율(2012년 신분류기준)

4.2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구분류기준) 중 내수비율은 97.4%에 이르며 특히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경우 2011년과 동일하게 10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단,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수출액이 전년대비 49.1%의 감소되어 이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III-19> '11 ~ '12년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구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구분	매출액 (A)		내수		수출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661	6,653	5,616	6,122	1,045	531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21,927	23,509	21,922	23,472	5	37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6,998	7,331	6,769	6,897	229	43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7	1,198	927	1,198	-	-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신분류기준) 중 내수비율은 98.0%에 이르며 특히 스포츠 서비스업과 스포츠 시설업의 경우 각각 99.97%, 99.7%로 거의 대부분이 내수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20> 2012년 신분류기준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신분류 기준)

(단위 : 십억원)

구분	매출액	내수	수출
스포츠 시설업	11,973	11,936	37
스포츠 용품업	27,233	26,106	1,127
스포츠 서비스업	18,273	18,26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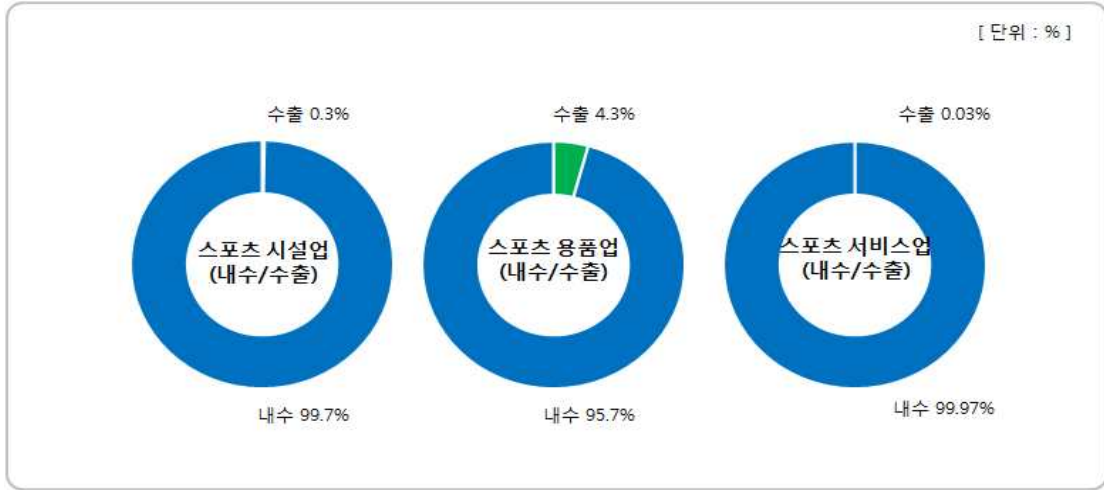


그림 Ⅲ-8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비율(2012년)

4.3 사업종류별 영업실적

- 스포츠산업의 사업종류별 영업실적(구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전체매출 38조 691십억원 중 영업이익은 3조 493십억원으로 9.0%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매출액 중 영업이익률이 1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이 11.3%로 조사됨
-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타 제조업에 비해 수출경쟁력도 떨어져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의 경우 브랜드, 품질 등 현안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시급함

<표 Ⅲ-21> '11 ~ '12년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A)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B)/(A)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운동 및 경기용품제조업	6,661	6,653	6,127	5,904	534	749	8.0	11.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927	23,509	20,170	21,642	1,397	1,867	6.4	7.9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6,998	7,331	6,246	6,622	752	709	10.7	9.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7	1,198	652	1,030	275	168	29.7	14.0

- 스포츠산업의 사업종류별 영업실적(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전체매출 57조 479십억원 중 영업이익은 4조 203십억원으로 7.3%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 시설업의 매출액 중 영업이익률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용품업이 7.6%로 조사됨

<표 III-22> 2012년 신분류기준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

(단위 : 십억원, %)

구분	매출액 (A)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B)/(A)
스포츠 시설업	11,973	10,836	1,137	9.5
스포츠 용품업	27,233	25,158	2,075	7.6
스포츠 서비스업	18,273	17,282	991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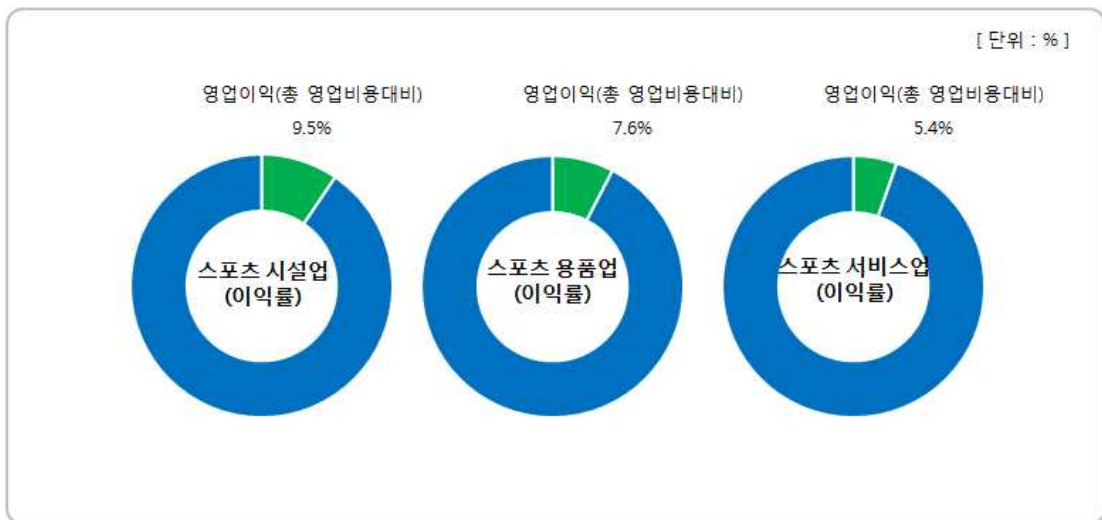


그림 III-9 사업종류별 영업 이익률(2012년)

5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5.1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

-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신분류기준)은 스포츠 시설업과 스포츠 용품업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스포츠 서비스업은 인력충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3>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단위 : 백명)

구분		인력충원*	
		2012년	2013년
합계		329	324
사업종류	스포츠 시설업	131	130
	스포츠 용품업	127	114
	스포츠 서비스업	71	79

*인력충원 :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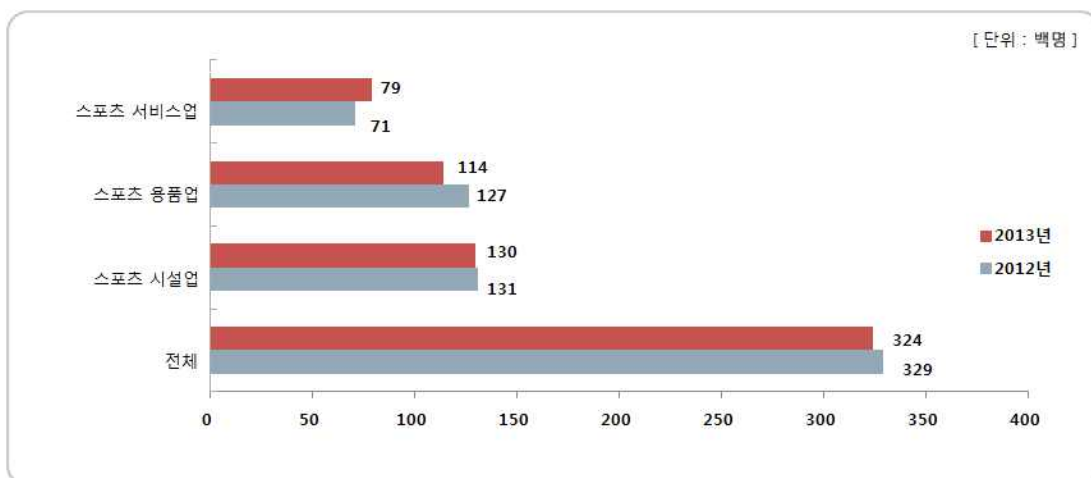


그림 III-10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5.2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사업종류별 경기전망(신분류기준)을 살펴보면 2012년에 1.5% 감소하였고, 2012년 3.6% 감소하여 전년대비 경기전망을 불투명하다고 예상하고 있음
- 제조업, 도소매업분야인 스포츠용품업의 경우 2012년에 1.6%에 반해 2013년도에는 -0.7%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 경기의 불황을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스포츠 시설업과 스포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2013년 전망을 각각 -5.3%, -4.6%로 예상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III-24>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단위 : %)

구분		사업체 경기전망	
		2012년	2013년
합계		-1.5	-3.6
사업종류	스포츠 시설업	-4.0	-5.3
	스포츠 용품업	1.6	-0.7
	스포츠 서비스업	-1.4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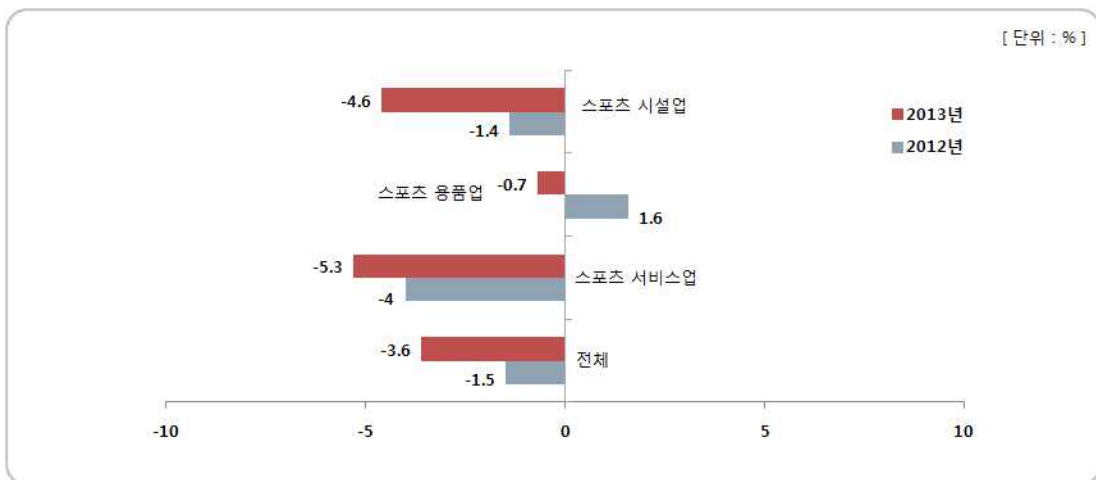


그림 Ⅲ-11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6 특성항목

6.1 스포츠 용품업 내수 및 수입액 현황

- 운동 및 경기 용품 유통·임대업(구분류기준)의 내수판매 매출은 6조 897십억으로 비중이 94.1%를 차지하여 여전히 내수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내수(매출) 비중이 6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가활동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라켓류의 경우 내수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 12.6%로 나타남. 이는 품질과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표 Ⅲ-25> '11~'12년 운동 및 경기 용품유통 임대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	비중						
		스포츠음료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2011년	내수	6,769	0.2	38.1	19.7	5.2	3.3	33.5
	수입	1,103	-	27.2	26.4	3.6	2.4	40.4
2012년	내수	6,897	-	17.5	8.8	4.6	4.7	64.4
	수입	665	-	16.0	6.3	5.0	12.6	60.1

- 스포츠용품업(신분류기준)의 내수판매 매출은 26조 10십억으로 비중이 95.6%를 차지하여 여전히 내수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내수(매출) 비중이 4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 의류가 36.1%로 나타남

<표 III-26> 2012년 신분류 기준 스포츠 용품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분	금액	비중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2012년	내수	26,105	36.1	10.2	2.1	2.2	49.4
	수입	948	16.2	8.3	4.5	10.1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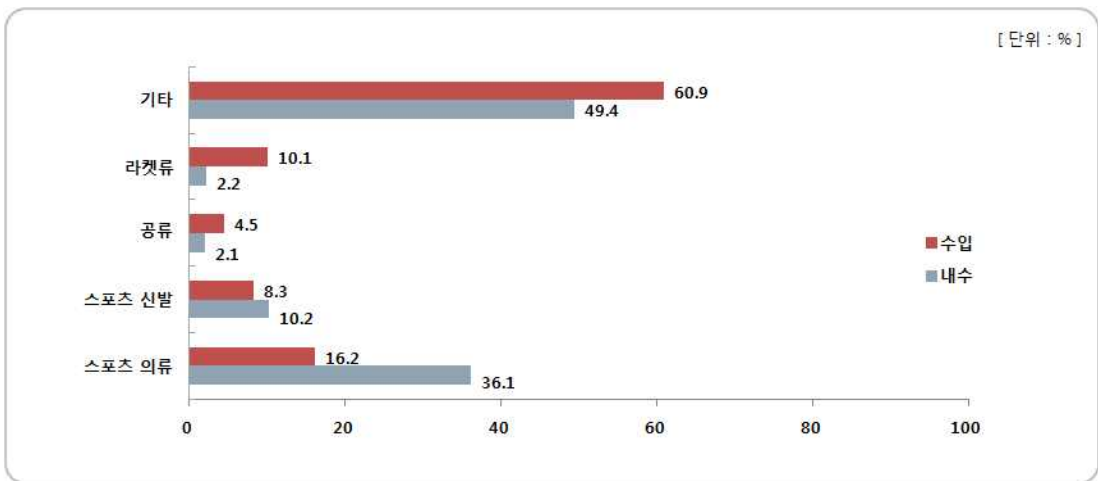


그림 III-12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6.2 스포츠시설업 연간 영업개월 및 이용인원

- 스포츠시설업(구분류기준)의 평균 영업 개월 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연간 11개월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인원수는 5억 4,829만명으로 조사됨
- 연간이용 인원수는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27> 스포츠 시설업 연간 영업개월수 및 이용인원

구 분	평균 영업개월수(월)		연간이용인원수(천명, %)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합 계	11	11	549,833(100)	548,298(100)	-0.3
경기장 운영업	12	12	32,997(6.0)	35,138(6.4)	6.5
골프장 운영업	11	11	40,182(7.3)	42,622(7.8)	6.1
스키장 운영업	6	6	9,943(1.8)	10,393(1.9)	4.5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11	11	435,133(79.1)	453,643(82.7)	4.3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	8	6,941(1.3)	6,503(1.2)	-6.3
캠블링 및 베틱업	12	-	24,637(4.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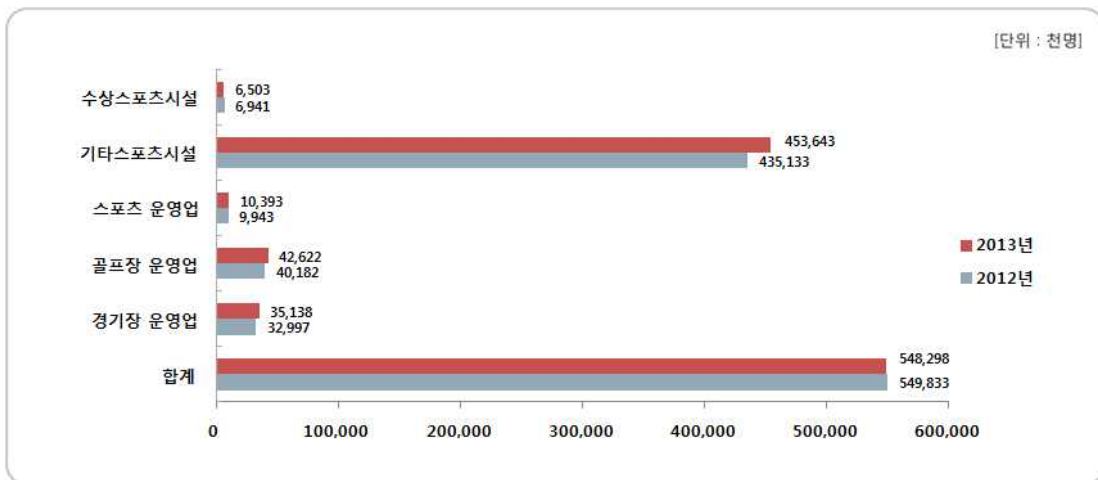


그림 Ⅲ-13 스포츠 시설업업 연간 이용객 비교

6.3 스포츠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 스포츠서비스업(구분류기준)의 경우 8~13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서비스업의 매출이 전체 34.6% 를 차지함
- 태권도, 수영 등 유아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그 외 연령대 매출은 6.3%~23.1% 사이로 조사됨

- 이는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등이 부족하여 8~13세 연령대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교육서비스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므로 각 연령대별 잠재수요를 확대할 필요성

<표 III-28>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구분	7세 이하	8~13세	14~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2010년	6.7%	49.0%	12.3%	9.4%	16.6%	6.1%
2011년	12.0%	54.4%	17.6%	7.5%	7.1%	1.4%
2012년	6.3%	34.6%	7.8%	23.1%	20.5%	7.7%

- 스포츠서비스업(신분류기준)⁵⁾의 경우 40~59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서비스업의 매출이 전체 28.1% 를 차지함
- 이는 스포츠베테링업, 스포츠 여행업 등의 이용하는 연령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III-29> 2012년 신분류기준 스포츠서비스업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구분	7세 이하	8~13세	14~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100.0	5.9%	23.4%	7.8%	23.5%	28.1%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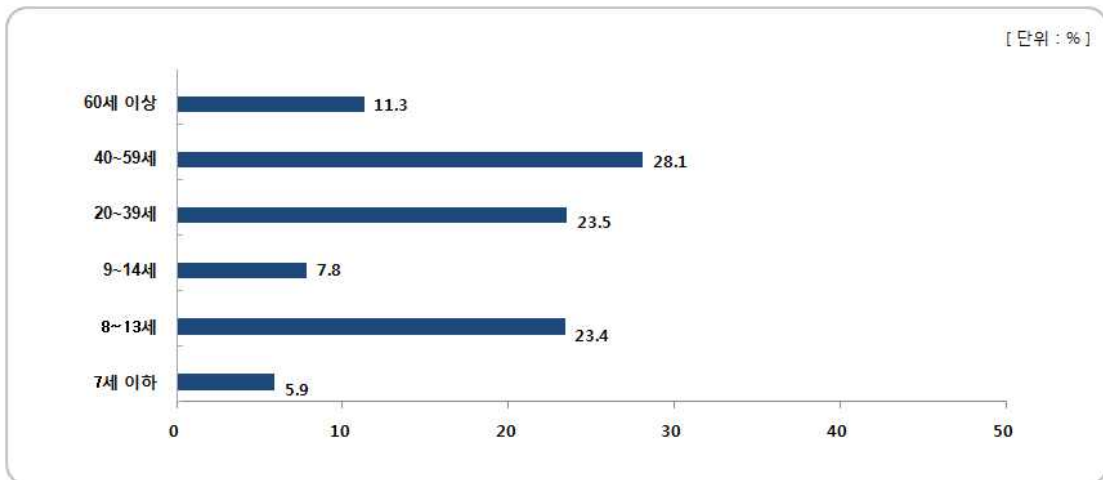


그림 III-14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5) 신분류기준 스포츠 서비스업은 전년의 교육기관만을 대상이었으나, 2012년 기준 조사에서는 베테링업, 마케팅업, 미디어업, 여행업 등이 추가되어 조사됨

7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조사 결과

7.1 전체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분석

- 스포츠산업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 강화, 육성·발전 장애요인, 육성·발전 지원 부문, 매출증대 방안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함
- 대외경쟁력 강화부문의 경우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높게 나타남

<표 Ⅲ-30> '09 ~'12년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양성	국산제품 품질제고	자체브랜드 개발	홍보 강화	대형화 전문화	정책부처 지원	산학연 협력강화	기타	
2009년	23.2	10.3	21.2	17.9	11.2	14.5	0.7	0.9	
2010년	18.1	6.2	8.7	35.3	5.2	21.2	2.4	2.9	
2011년	23.1	6.3	11.6	28.2	7.6	18.6	3.0	1.6	
2012년	구분류	13.4	11.2	11.2	25.1	7.9	23.1	4.1	4.0
	신분류	13.3	11.5	11.8	25.4	7.6	23.1	4.4	2.9

Ⅲ
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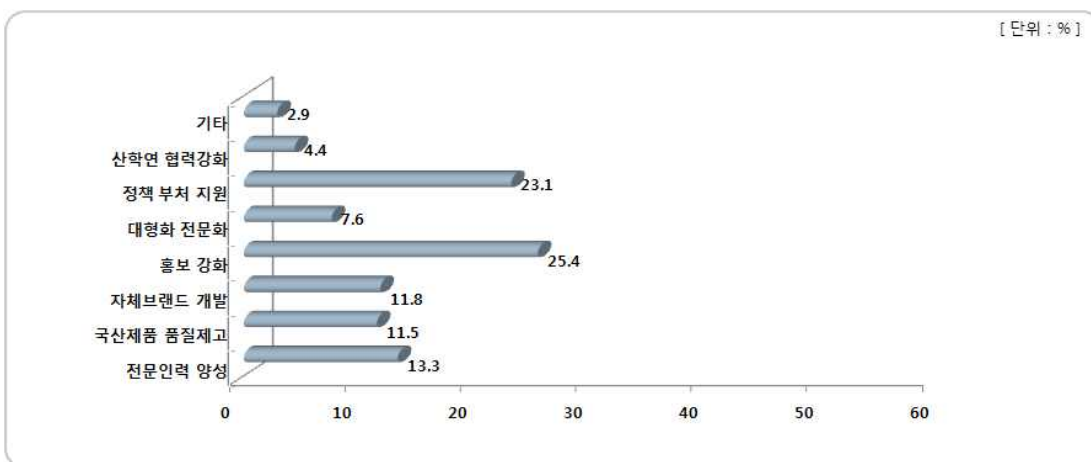


그림 Ⅲ-15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부문(2012년)

- 육성·발전 장애요인의 경우 “사업체의 영세성”, “자금부족” 등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10인 이하 사업체수가 전체 90%를 상회하여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에 “제도규제 과다”, “정부지원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31> 육성발전 장애요인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부족	제도규제 과다	외국업체 시장잠식	정부지원 미흡	기타	
2009년	17.5	18.4	24.3	8	14.3	5.1	11.3	1.1	
2010년	8.1	24.1	23.2	7.2	11.5	2.3	17.8	5.7	
2011년	11.8	26.1	23.9	6.6	11.6	2.7	13.7	3.6	
2012년	구분류	7.4	22.8	20.0	8.9	14.1	5.7	13.8	7.3
	신분류	7.0	22.5	19.4	9.6	14.5	6.1	13.2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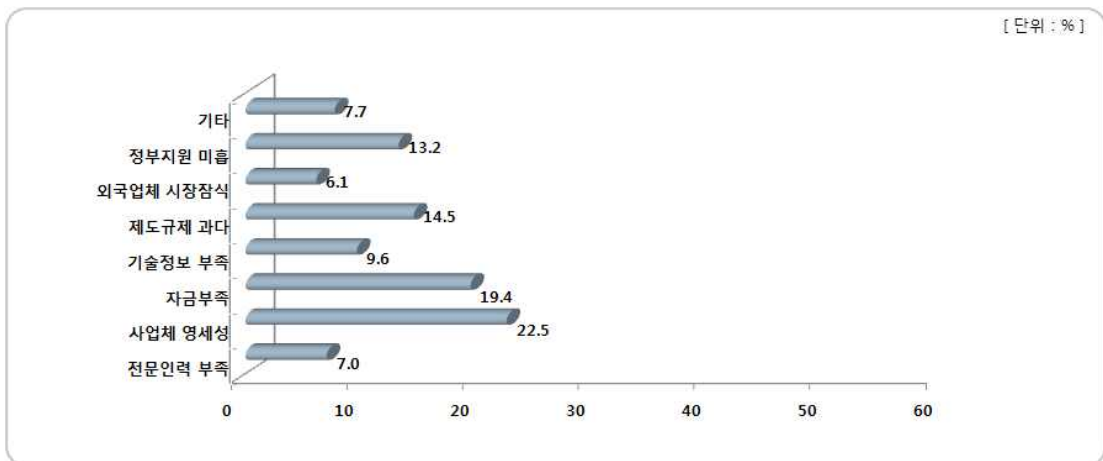


그림 III-16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2012년)

- 육성·발전 지원부문에서는 “자금지원확대”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지원정책이 점차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곤 있지만 스포츠산업 특성상 영세한 업체가 워낙 넓은 범위와 다양한 업종으로 존재하여 하위 업종별 구분을 통하여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
- “국제대회 유치”가 육성·발전 지원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큰 규모의 국제대회에 대한 기대감 및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표 Ⅲ-32> 육성발전 지원부문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금지원 확대	연구개발 기술지원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통합정보망 구축	국제대회 유치	국제교류 해외진출	기타
2009년	20.6	42.9	14.2	2.9	9.4	5.3	2.6	2.2
2010년	13.4	43.7	7.5	1.8	11.2	12.7	3.3	6.4
2011년	12.9	50.6	6.8	3.1	9.5	11.8	1.7	3.6
2012년	구분류	9.5	42.6	8.7	5.5	7.8	2.5	9.9
	신분류	9.5	42.1	9.0	5.5	7.9	2.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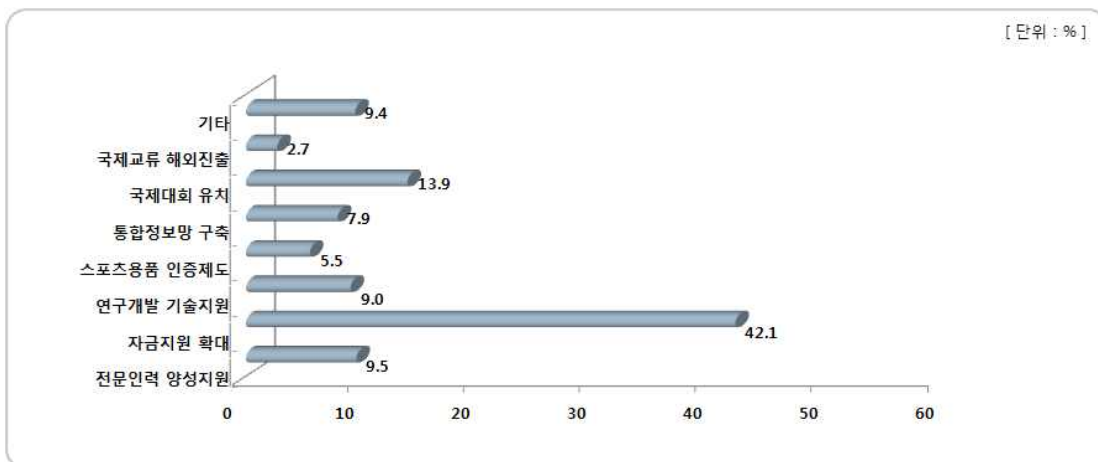


그림 Ⅲ-17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2012년)

- 매출 증대방안으로는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가 높게 나타남. 이는 영세업체의 국내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스포츠산업에 대한 내수시장이 최근에 확대되고 내수시장의 경쟁력이 곧 세계시장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I-33> 매출 증대방안

(단위 : %)

구분		전문인력 채용	자체브랜드신규제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기 타
2009년		16.5	20.8	43.3	14.0	2.9	2.5
2010년		7.5	9.5	57.6	19.3	1.6	4.5
2011년		9.6	9.2	55.9	17.8	1.4	6.1
2012년	구분류	9.0	13.1	38.3	25.2	2.8	11.6
	신분류	9.1	14.1	37.2	25.9	2.9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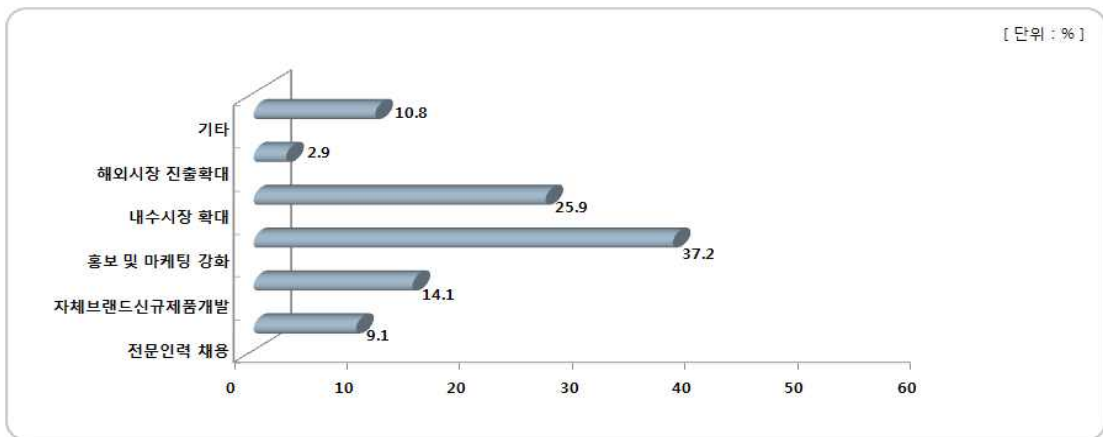


그림 III-18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2012년)

8

성과 및 제언

8.1 성과

■ 국가승인통계 유지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3」 적용

○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는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총 65개 세세분류로 확대하여 진행

○ 2011년 기준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을 총 45개 세세분류로 구성하여 진행됨

■ 모집단 보완

○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잠정)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65개 산업세세분류 중 38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2011년 기준조사와는 동일하게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실행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의 기획부터 보고서 생산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국가통계생산 표준프로세스(KSBPM : Korea Statistics Business Process Model)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시킨 업무프로세서로 기관 간 통계경험과 전문성 편

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범용 통계 정보시스템

○ 유사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영공시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자료와 비교·검토, 수준점검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 정합성, 정확성을 제고

※ 조사자료 검증 및 수준분석을 위한 비교자료

- 2012년 사업체기초조사 통계 비교·검토
-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와 비교·검토
- DART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와 비교·검토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복권발행업, 스키장운영업 등 사업체 개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스포츠산업 통계체계 네트워크 구축

○ 2012년 기준조사는 한국통계진흥원의 협조로 통계 작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

○ 표준지침(스포츠산업실태조사 조사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조사과정, 조사원교육, 자료처리 등 전반적인 조사체계 구축

○ 스포츠산업 통계의 유통을 위한 온라인 체계 구축(www.spobiz.kr)

8.2 제언

■ 표본명부

- 동 조사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모집단이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 가능하므로 향후 조사시에도 모집단 확보 및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국 사업체조사 활용 및 관련 산업 유무, 최신 모집단 자료 수집, 행정자료 등을 통한 모집단 보완 등을 통하여 정확한 표본 추출틀이 작성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의 재분류

- 산업분류의 구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분류내에 산업분류간 동질성이 부족하여 특성항목별 조사사항에 애로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회전목마 제조업,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기원운영업은 포함되나 유원지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등이 제외되며, 복권발행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은 특성항목인 연간 이용인원 수를 조사할 수 없음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정의되어 있는 세부항목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 현장조사시 어려움이 있었음
 - 스포츠의류, 경기용 신발, 스포츠용 자전거, 흥행장용품 등의 기준, 골프용, 기타 운동용 가방, 스포츠오락용 기계, 바둑 및 장기 등의 포함 여부 등 구분이 곤란
- 스포츠산업분류의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스포츠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세분류는 스포츠산업 세분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조사결과

- 스포츠산업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수를 추정함에 따라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결과 활용시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공표단위를 조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예산에 따른 최적의 표본을 산출하였으나, 보다 신뢰수준이 높은 자료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본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사방법

- 조사기준과 기업체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총량 추정
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추후 조사 시 조사범위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 정부기관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 수수료를 사업실적으로 조사
 - ※ 부산지방공단 스포윈, 창원경륜공단, 스포츠토트의 경우 각각 부산광역시, 창원
시,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사업자로 기업회계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사업실적임

IV 부 록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 정의
4. 조사표와 결산서 관계
5. 조사표

【부록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1.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1-1	경기장 운영업	1010101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1010102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1010103	91113	경주장 운영업			
		1-2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201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202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010203	91133	수영장 운영업			
				1010204	91134	볼링장 운영업			
				1010205	91135	당구장 운영업			
				1010206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1010207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1010208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		
				1010209	91293	기원 운영업			
		1-3	골프장및스키장 운영업	1010301	91121	골프장 운영업			
				1010302	91122	스키장 운영업			
		1-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401	91231	낚시장 운영업			
				1010499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		
		1-5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1019900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6	스포츠건설업	1020001	41226	조경 건설업			
				1020002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2.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업	2-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10101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볼링용구, 당구용구
						2010102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2010103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010104	33303	낚시낚 및 수렵용구 제조업	
2010105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2010106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2010199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2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2010201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2010202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캠핑용 식물제품
						2010203	13229	기타 식물제품 제조업	구명자켓, 구명벨트
						2010204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제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2-3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10301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스포츠의류 부분품	
				2010302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제조	
				2010303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4	운동및경기용품 도매업	2020101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2020102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및 부품 도매	
				2020103	46413	서즈 및 외의 도매업		
				2020104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2020105	46420	신발 도매업		
		2-5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	2020201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2020202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소매	
				2020203	47416	서즈 및 기타 의복 소매업		
				2020204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2020205	47420	신발 소매업		
				2020206	47911	전자상거래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2-6	운동및경기용품 임대업	2020300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3.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1	스포츠 경기업	3010100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3-2			스포츠 베틱업	3010201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포츠 토토
			3010299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틱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배팅시설	
3-3	스포츠 마케팅업		3010301	73901	매니저업	스포츠인 매니저		
			3010302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3010303	71531	경영컨설팅업			
			3010399	91199	그외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4		스포츠 미디어업	3020101	58121	신문 발행업	스포츠신문	
				3020102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020103	60100	라디오 방송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3020104	60210	지상파 방송업	
				3020105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3020106	60222	유선 방송업	
				3020107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5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9900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스포츠 교육기관	3-6	스포츠 교육기관	3030001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3030099	85612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3-7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990101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199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8	스포츠 여행업	3990200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부록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 스포츠산업분류 부문

① [스포츠 시설업]

1-1 경기장 운영업

분류코드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수영장운영(관람석 있는 실내경기장), 실내체육관운영(관람석갖춘), 빙상장운영(관람석갖춘), 권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농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레슬링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배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배드민턴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수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수영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을갖춘), 실내경기장운영(관람석갖춘), 실내농구장운영(관람석갖춘), 씨름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유도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태권도경기장(실내 ; 관람석갖춘)

분류코드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육상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풋살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풋살축구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종합운동장(실외 ; 관람석갖춘), 럭비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실외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야구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야외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운동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육상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축구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프로야구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필드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하키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분류코드 91113 경주장 운영업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경륜장
- 경마장
- 자동차 경주장
- 투우장

제 외

-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발행소(91249)

색인어

경주마사육관리(경마장에서), 경륜경기장운영, 경륜장운영, 경마장관리사무소, 경마장운영, 경주장운영(경마 경륜등), 과천경마장운영, 동물경기장운영, 모터사이클경주장운영, 싸이클경기장운영, 오토바이경기장운영, 자동차경주장운영, 자전거경주장운영, 제주경마장운영, 투견장운영

1-2 참여스포츠시설 운영업

분류코드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건물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종합 체육시설
- 복합 체육시설

색인어

종합스포츠시설운영, 건강생활체육관운영, 육체미도장운영, 체력단련도장운영, 체력단련장운영, 체육관운영, 레포츠센터(종합운동시설 ; 경기장제외), 복합운동시설운영(경기장제외), 복합체육시설운영, 스포츠센터운영(종합운동시설 ; 경기장제외), 실내체육관운영(관람석없는), 어린이놀이터운영, 종합운동시설운영(경기장제외), 체육시설운영(종합운동시설 ; 경기장제외)

분류코드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헬스클럽

제 외

- 무도장(91291)
- 교육목적의 체력단련시설 운영(85611)

색인어 체력단련시설운영, 암벽등반장 운영(체력단련용), 클라이밍클럽운영(체력단련용), 휘트니스센터운영, 휘트니스클럽운영, 성장지원센터(체력단련목적), 주민자치센터(체력단련시설운영), 단전호흡시설운영, 보디빌딩시설운영, 보디빌딩업(체력단련시설), 헬스클럽운영

분류코드 91133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분류코드 91134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볼링센터운영, 볼링장시설운영, 볼링장운영

분류코드 91135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당구클럽운영, 빌리어드클럽(당구장)운영, 당구장운영, 포켓볼당구장

분류코드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스크린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운영

분류코드 91291 무도장 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무도장
- 콜라텍
- 댄스홀

제 외

- 무도유흥주점 및 디스코클럽 운영(5621)
-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8561)

색인어 댄스장운영, 댄스홀운영, 무도장운영, 콜라텍(무도장)

분류코드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여가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체육공원 운영
- 시민공원

제 외

- 유원지 운영업(91210)
-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0232)

색인어 공원관리사무소운영(자연공원제외), 시민공원운영, 공원관리사무소(체육공원 시민공원등), 체육공원관리사무소(체육공원), 근린공원, 시민공원운영(유원지제외), 오락공원관리운영, 체육공원운영

분류코드 91293 기원 운영업

바둑, 장기, 체스, 카드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교육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5612)

색인어 기원운영(장기 바둑), 바둑시설운영, 장기시설운영(바둑·장기등), 체스시설운영, 카드놀이기원운영

1-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분류코드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 골프연습장(91136)

색인어 골프장운영(숙박시설과독립된), 골프코스 운영(연습장제외),
골프장운영(골프연습장제외)

분류코드 91121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 눈썰매장(91139)
-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

색인어 스키장운영(숙박시설없는)

1-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분류코드 91231 낚시장 운영업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유료 낚시터 운영
- 실내 낚시장 운영

색인어 낚시장운영, 낚시터제공, 낚시터운영, 실외낚시장운영(유료), 유료낚시터운영

분류코드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 마리나업
- 오락용 낚시배 운영
- 오락용 보트임대(물놀이시설내)
- 해수욕장 운영

제 외

- 유료 낚시터 운영(91231)

색인어 스킨스쿠버 다이빙 체험, 래프팅체험제공, 바나나보트운영, 땅콩보트운영, 래프팅,
수상스키장, 해수욕장운영, 놀이용보트임대(물놀이시설), 마리나업,

보트임대(물놀이시설), 오락용낚시배운영,
오락용보트임대(저수지등; 물놀이시설내), 정박설비임대(승무원없이)

1-5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분류코드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시

- 스쿼시장
- 테니스장
- 롤러스케이트장
- 요트장
- 카누장
- 탁구장
- 야구연습장
- 승마연습장
- 조정장

제외

- 오락용 사격장(91229)

색인어

풋살장, 게이트볼경기장, 공기총사격장운영(오락용제외), 국궁장운영, 궁도장운영(오락용제외), 눈썰매장운영, 라켓게임경기장운영, 라켓게임용운동설비운영, 롤러스케이트장운영, 배드민턴장운영(경기장제외), 석궁장운영, 수렵장운영(스포츠), 스쿼시장운영, 승마장운영, 썰매장운영

1-6 스포츠시설 건설업

분류코드 41226 조경 건설업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 외부환경 조성공사
- 정원 조성공사
- 조경 건설공사
- 녹지 조성공사

제 외

-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색인어

공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 외부환경조성공사, 정원개발공사(토목공사), 정원조성공사, 조경공사(토목), 조경시설물공사, 조경연못공사, 조경용시설물설치공사, 조경용연못건설, 조경용인공호수(굴착)건설, 조경용인공호수(토목), 조경건설, 화단조성공사, 인조잔디운동장공사

분류코드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기타 토목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스타디움공사
- 상/하수도관공사
-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공사
-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공사
- 급/배수관 및 파이프라인공사

제 외

- 농지개발 및 정지, 광업관련 계약 공사(4121)

색인어

가스관시설공사, 가스도관배관공사(토목공사관련), 가스배관공사(토목공사관련), 가스시설공사(토목), 가스파이프시설공사, 가스파이프이설도급공사, 건널목차단기설치공사, 경기장시설공사, 경륜(싸이클)장건설, 경마장건설, 골프장공사, 공익시설물건설(정수장 도로시설등), 공중편익시설공사, 관(배관)공사, 관개용수관공사

2 [스포츠 용품업]

2-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분류코드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경기용 장비, 수중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펜싱용구 제조
- 탁구용 기구 제조
- 장갑류 제조(경기용)
- 양궁장비 제조
- 골프클럽 제조
- 라켓 제조
- 공 제조(각종 경기용)
- 실상 스키 제조
- 배트 및 스틱류 제조
- 골프장비 제조

제 외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33301)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3303)
- 볼링 및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3409)

색인어

동계경기용장비제조, 등산용지팡이제조, 등산용철물제조, 등산장비제조(등산화 등산용배낭제외), 라켓제조, 로온테니스공제조, 로온테니스라켓제조, 롤러스케이트제조, 모자제조(경기용), 모터사이클용글러브제조, 미식축구공제조, 배구공제조, 배구용품제조, 배드민턴공제조, 배드민턴라켓제조

분류코드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판 게임용 장비, 스포츠오락용 기계, 당구, 볼링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도박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바둑 및 장기 제조
- 스포츠오락용 기계 제조
- 유희용구 제조
- 유희용 카드 제조
- 당구용구 제조
- 카지노게임용 테이블 제조
- 체스 제조
- 도박게임장비 제조
-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 실내게임용 기계기구 제조
- 테이블 게임용 기계기구 제조
- 볼링용구 및 관련 장치물 제조

제 외

-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장식용품(전기 제외) 제조(33999)

색인어

당구용구제조, 도박게임장비제조(영상게임기제외), 레인제조(보울링용구),
 바둑제조, 볼링공제조, 볼링볼제조(오락용품), 볼링용구제조, 볼링용볼제조,
 볼링장치제조, 볼링핀제조, 스포츠오락용기계제조,
 실내게임용구제조(영상용게임기제외),
 실내게임용기계기구제조(영상용게임기제외), 오락용테이블장비제조, 유희용구제조

분류코드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장비체력단련용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헬스 장비 제조
- 체조용품 제조
- 체조용 링 제조
- 클라이밍 로프 제조
- 바렐 제조
- 스프링보드 제조

제 외

-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3302)
-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3309)

색인어

경기용구제조(체조및육상용), 권투(레슬링)용링제조, 금속제경기용품제조(육상용),
 네트제조(경기용), 네트지지대제조(운동용), 농구대제조(경기용),
 농구장설치장비제조, 런닝머신제조, 링제조(운동용), 바렐제조(운동용),
 바제조(운동구용), 배구장설치장비제조, 배드민턴용네트제조, 보디빌딩용구제조,
 복싱링설치장비제조

분류코드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 신체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 이륜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제 외

-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1920)
- 어린이용 삼륜자전거 제조(3340)

색인어

유모차부품제조, 유모차제조, 경기용자전거제조, 경주용싸이클제조, 곡예용자전거제조, 기어제조(자전거용), 기어크랭크제조(자전거용), 방향지시기제조(자전거용), 배달용삼륜자전거제조, 백과이프제조(자전거부품), 브레이크와이어제조(자전거용), 브레이크제조(자전거용), 사이클제조, 삼륜거제조(세발자전거 성인용), 삼륜자전거제조(아동용제외)

분류코드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낚시장비 제조
- 인조미끼 제조
- 낚시용 망 제조
- 조류 유인용구 제조
- 수렵용구 제조
- 포충망 제조

제 외

- 양궁장비 제조(33309)
- 어망 제조(13922)
-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 골프장비(공, 글러브 제외) 제조(33309)

색인어

강화플라스틱제낚시용구제조, 낚시대제조, 낚시릴제조, 낚시미끼제조(인조미끼), 낚시바늘제조, 낚시봉제조, 낚시용릴제조, 낚시용망제조, 낚시용부찌제조, 낚시용인조미끼제조, 낚시장비제조, 낚시줄제조(가죽제제외), 낚시찌제조, 릴제조(낚시용), 미끼제조

분류코드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시소 제조
- 회전 그네 제조
- 미끄럼틀 제조
- 놀이대 제조

제 외

-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색인어

그네제조(놀이터용), 놀이기구제조(놀이터용), 놀이대제조, 놀이터용장비제조, 미끄럼틀제조, 시소제조(놀이터용), 어린이놀이시설제조, 어린이놀이터용장비제조, 회전그네제조, 회전탑제조

분류코드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키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 및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및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보호장비는 이곳에 분류한다.

예 시

- 흥행장용품 제조
- 유희장 용품 제조
- 빗, 헤어슬라이드 제조
-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 마네키인형 제조
- 커얼링핀 제조
- 젤라틴제 이쑤시게 제조
- 회전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 커얼링크림 제조
-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장식용품(전기 제외) 제조

제 외

- 귀금속제 머리핀 제조(3311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제조(28423)

색인어

비녀제조(귀금속 보석제제외), 비닐제깔개제조, 비닐제카펫제조(덮개), 빗제조(귀금속제제외), 수동식어레미제조(체), 수동식체제조, 어레미제조(체), 여과용기제조, 이쑤시게제조(젤라틴제), 자동인형제조, 정수통제조, 진공용기제조, 체제조(목제; 수동식), 캣거트제조, 커얼링크림제조

분류코드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멍정 등의 건조도 포함된다.

예 시

- 유람용 보트 제조(노용)
- 경기용 선박 제조
- 운동용 선박 제조
- 카약 제조

- 커터 제조
- 낚시용 보트 제조

제 외

·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3111)

색인어

강화플라스틱제요트제조(FRP), 경기용보트건조, 경기용선박제조, 낚시용보트제조, 모터보트제조(오락및경기용), 범선건조, 보트건조(오락및경기용), 보트제조(오락용), 선박제조(오락및경기용), 소용범선건조, 아웃보오드모터보트제조, 오락용보트건조, 요트건조, 유람용보트제조(노용), 카누건조

분류코드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로켓트발사기, 소형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 폭탄 제조
- 총탄 제조
- 비군사 무기 제조
- 공기총 제조
- 가스총 제조
- 경기용 무기 제조
- 수렵용 무기 제조

제 외

- 폭발점화장치, 너관, 불꽃제품 및 화약 제조(20494)
- 탱크, 전차 제조(31910)
-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31310)
- 단검 제조(25931)

색인어

가스권총제조, 가스총부분품제조, 가스총제조, 격발자제조(무기용), 경기용라이플제조(총), 경기용무기제조, 경기용산탄총제조, 공기총제조, 공기총탄환제조, 군용연발권총제조, 군용화기제조(소총 대포 곡사포), 권총제조, 기관총제조, 기관포탄탄체제조, 기뢰장착조립

2-2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분류코드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남녀용 셔츠, 블라우스 및 체육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된다.

예 시

- 블라우스 제조
- 체육복 제조

색인어

경기복제조, 남자수영복제조, 남자용셔츠제조, 블라우스제조, 블라우스제조, 셔츠블라우스제조, 셔츠제조(남녀용), 수영복제조(남녀용), 스키복제조(기성복), 스키슈트제조, 여자수영복제조, 옷제조(셔츠및체육복; 편조의복제외), 와이셔츠제조, 운동복제조(편조의복제외), 체육복제조(남녀용)

분류코드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핑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걸뒹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차양 제조
-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 구멍대 제조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 돛 제조

제 외

- 구멍자켓 및 구멍벨트 제조(13229)

색인어

걸뒹개제조(캔버스제품), 구멍대제조(캔버스제품), 기계커버제조(캔버스제품), 뒹개제조(캔버스제품), 돛제조, 매트리스제조(압축공기식), 범포제품제조(배낭우편낭 가방제외), 압축공기식매트리스제조(캔버스제품), 야영용직물제품제조(텐트등캔버스제품), 자동차용뒹개제조(캔버스제품), 자동차용커버제조(캔버스제품), 차양제조(캔버스제품), 차양텐트제조, 천막제조, 캔버스제품제조(천막등; 가방 신발 배낭제외)

분류코드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먼지 털이개 제조(직물제)
- 세탁보 제조
- 직물제 마스크 제조
- 깃발 제조
- 낙하산 제조
- 구멍벨트 제조

- 구명자켓 제조
- 신발류 끈 제조
- 드레스 패턴 제조
- 페넨트 제조

제 외

- 구명대 및 캔버스제품 제조(13224)

색인어

거즈마스크제조(방직용섬유제), 걸레제조(직물제), 관절지지용직물제품제조, 구명벨트제조(안전벨트포함), 구명재킷제조, 국기제조(직물제), 근육지지용직물제품제조, 기(旗)제조, 깃발제조(직물제), 나이론제보자기제조, 낙하산제조, 냅킨제조(섬유제), 드레스패턴제조(직물제), 로토슈우트제조(직물제품), 마루담이포제조(직물제품)

분류코드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의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잠수복 제조
- 우의 및 방수복 제조
- 방사선 예방보호복 제조
- 의류부분품 제조
-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 가운류(종교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색인어

가운제조(종교의식복 학사복 법복등), 교통안전용야광복제조, 레인코트제조, 방사선보호복제조(고무제제외), 방수복제조, 방열복제조(고무제제외), 상복제조, 소방용방열복제조, 승복제조, 우비제조(의복), 우의제조, 의류부분품제조, 의복부분품제조, 종교의식복제조, 특수의복제조

2-3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분류코드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시

- 트렁크 제조
- 등산용 배낭류 제조
- 공구백 제조
- 안경 케이스 제조
- 사진기 케이스 제조
- 악기 케이스 제조

제 외

-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케이스 제조(15121)

색인어

화장백제조, 화장용품백제조, 화장품케이스제조, 가방제조(종이제제외 핸드백제외), 가죽가방제조(핸드백제외), 가죽제백제조(핸드백제외), 가죽제서류가방제조, 가죽제케이스제조(지갑및핸드백제외), 가죽제품제조(가방및보호용케이스), 가죽케이스제조(핸드백및지갑제외), 공구백제조(플라스틱봉투 종이가방제외), 광학기구용케이스제조(플라스틱봉투 종이가방제외), 권총케이스제조, 금속보강여행용가방제조, 나이론제가방제조

분류코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경기용 신발 제조
- 운동화 제조
-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 플라스틱 신발 제조
- 발레용 신발 제조
- 각반 제조
- 짚신 제조
-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제 외

-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5220)

색인어

군화제조(전투화), 나막신제조, 나무신발제조, 농구화제조, 등산화제조, 목제신발제조, 발레용신발제조, 방수신발제조, 비닐제샌들제조, 비닐제슬리퍼제조, 비닐제신발제조, 비치샌들제조, 샌들제조(비정장용), 소가죽제신발제조(구두류제외), 스노우보드부츠화제조

분류코드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신발 갑피 제조
- 뒷굽 제조(신발용)
- 안창 제조(신발용)
-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색인어 가죽신발재료제조, 갑피제조(신발용), 구두힐제조(플라스틱제), 뒷굽제조(신발용), 밑창제조(신발용), 소가죽제신발갑피제조, 신발갑피제조, 신발뒷굽제조, 신발밑창제조, 신발바깥바닥제조, 신발부분품제조, 신발부속품제조, 신발외창제조, 신발용가죽지지물제조, 신발용보강재제조

2-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분류코드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운동장비 도매
-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 경기용품 도매
- 등산화 도매

색인어 경기용품도매, 골프공도매, 골프장비도매, 공도매(농구 축구공등공기를불어넣는공), 구기용품도매, 권투글러브도매, 글러브도매(경기용), 네트웍스도매(운동용), 농구공도매, 등산용배낭도매, 등산용신발도매, 등산용품도매, 등산장비도매, 등산화도매, 라켓도매

분류코드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각종 장난감, 모조장식품 및 오락용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낚시도구 도매
- 오락 게임용품 도매
- 유희용구 도매
-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 공예품 및 세공품 도매
- 화투 및 트럼프 도매
- 트로피 도매
- 세발자전거 도매

제 외

-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46464)
- 의복액세서리(귀금속제외) 및 모조장신용품 도매(46417)

색인어 어망도매(낚시용), 오락게임용구도매(실내), 오락게임용품도매, 오락용기계장비도매, 완구도매, 완구수출, 완구용불꽃도매, 유희용구도매, 인조꽃도매, 인형도매, 장난감기차도매, 장난감도매(승용및비승용포함),

전자식오락게임기도매, 전파유도모형도매, 조립완구도매

분류코드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자전거 등의 기타 가정용 운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자전거 및 부품 도매
- 개인용 운송장비 도매(동력식)

색인어

리어카도매, 비동력운송장비도매, 사이클도매, 손수레도매, 운송장비도매(비동력식), 자전거도매, 자전거부품도매, 튜브도매(자전거·수레용), 바퀴도매(자전거), 휠체어도매(동력식), MTB(자전거)도매, 자전거도매(동력식), 휠체어도매

분류코드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남녀용 셔츠 및 외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양복 및 양장 도매
- 양복조끼 도매
- 반바지 도매
- 작업복 및 체육복 도매
- 수영복 도매
- 소아용 기성외의 도매

제 외

- 유아용 외의 도매(46414)

색인어

개량한복도매, 교복도매, 근무복도매, 기성복도매(외의), 남녀아동복도매(외의), 남녀외의도매, 남녀정장도매, 남성복도매(외의), 남자기성복도매(외의), 남자용레인코트도매, 남자용작업복도매, 남자용정장류도매, 니트웨어도매, 단체복도매, 드레스도매

분류코드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각종 재료(천연·합성·대용 등)제의 가방, 여행용품 및 기타 가정용 가죽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지갑 및 핸드백 도매
- 열쇠 케이스 도매

- 트렁크 도매
- 여행용 액세서리 도매
- 화장품케이스 도매
- 보호용 케이스 도매

색인어 가방도매(종이및비닐제제외), 가방무역, 가방재료도매, 가죽가방도매, 보호용케이스도매, 서류가방도매, 여행용가방도매, 여행용액세서리도매, 여행용품도매, 열쇠케이스도매, 지갑도매, 트렁크도매, 학생용가방도매, 핸드백도매, 화장품케이스도매

분류코드 46420 신발 도매업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신발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구두 도매
- 부츠 도매
- 운동화 도매
- 짚신 도매

제 외

- 등산화 도매(46464)

색인어 가죽신발도매, 가죽신발재료도매, 고무신발도매, 구두끈도매, 구두류도매, 끈도매(신발끈), 나막신도매, 남성용구두도매, 남자용신발도매, 밀창도매(신발), 부츠도매, 비닐제샌들도매, 비닐제신발도매, 샌들도매, 슬리퍼도매

2-5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분류코드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및 경기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등산 장비(텐트 포함) 소매
- 펜싱, 검도 장비 소매
- 헬스기구 소매
- 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 소매

제 외

- 낚시장비 소매(47640)

색인어 가정용골프네트소매, 건강기구소매(체력단련기), 검도용품소매, 검도장비소매,

경기용품소매, 골프장비소매, 공(볼)소매, 구기용볼소매, 궁도용품소매, 글러브소매(경기용), 동계스포츠장비소매, 등산용품소매, 등산장비소매(텐트포함), 등산화소매, 라켓소매(운동용)

분류코드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오락용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낚시 장비 소매
- 게임기 및 게임팩 소매
- 당구장비 소매
- 바둑 소매
- 화투, 트럼프 소매
- 조립완구 소매

색인어

바둑게임용구소매, 바둑용구소매, 비닐제완구소매, 아동완구제품소매, 어구소매(낚시용구), 어린이완구소매, 어린이장난감소매, 어망소매(낚시용), 오락게임용구소매, 오락용게임기소매, 오락용게임용구소매, 완구소매, 완구점, 요술용품소매, 인형소매

분류코드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예 시

-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 개인용 운송장비 소매(비동력식)

제 외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매(45)

색인어

개인용운송장비소매(비동력식), 리어카소매, 사이클소매, 손수레소매, 운송장비소매(개인용 ; 동력식제외), 자전거부품소매, 자전거소매, 자전거용품소매

분류코드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남녀용 셔츠, 운동복, 작업복, 근무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가족제의복 소매
- 니트외의 소매

- 모피의류 소매
- 아동복 소매
- 청바지 소매
- 수영복 소매

색인어 가죽옷소매, 가죽제의복소매, 골프의류소매, 교복소매, 근무복소매, 남녀아동복소매점(만6세이상), 남녀청바지소매, 남녀캐주얼소매, 남방소매, 남성복소매(정장제외), 남자바지소매(정장제외), 남자용작업복소매, 남자용커터셔츠소매, 니트셔츠소매, 니트스웨터소매

분류코드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핸드백 및 지갑 소매
-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 트렁크 소매
-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 장갑 및 의복벨트 소매(47419)

색인어

가방소매, 가죽가방소매, 가죽수공예재료소매, 가죽제품소매(의복액세서리제외), 보호용케이스소매, 비닐백소매, 쇼핑백소매, 여행용가방소매, 열쇠케이스소매, 지갑소매, 책가방소매, 트렁크소매, 피혁제품소매(의복액세서리제외), 핸드백소매

분류코드 47420 신발 소매업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남녀용 정장화 소매
- 운동화 소매
- 각반, 나무신발 소매
- 신발끈 소매

제 외

- 등산화 소매(47631)

색인어

캐주얼구두소매, 플라스틱신발소매, 피혁제화소매(등산화제외), 가죽신발소매, 각반소매, 고무신소매, 구두소매, 기성화소매, 끈소매(신발끈), 나막신소매, 나무신발소매, 남녀구두소매, 남녀운동화소매, 남자용신발소매(등산화제외), 남자용정장신발소매

분류코드 47911 전자상거래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471~478로 분류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색인어 기업소비자간전자상거래(B2C), 상품소매(전자상거래방식), 쇼핑몰운영(전자상거래; 유형재), 온라인상품판매(소매), 인터넷통신판매(통신소매; 유형재), 인터넷상품판매(소매), 인터넷통신판매(소매; 유형재), 전자상거래(소매; 유형재), 전자쇼핑몰운영(소매; 유형재), 통신판매(온라인)

분류코드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인쇄물 광고 소매
- 카달로그 소매
- 전화 소매
- 우편 소매
- TV 홈쇼핑

색인어 39쇼핑(케이블방송), 꽃배달서비스(통신판매만하는경우), 우편소매(통신판매), 전화소매(통신판매), 카달로그판매(통신판매), 통신주문송달판매, 홈쇼핑(유선방송으로판매), TV홈쇼핑판매

분류코드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점포 판매업으로서 차량 등을 이용하여 구역간을 이동하면서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색인어 구역간이동판매, 이동판매(소매; 구역간), 차량이동판매(구역간)

분류코드 47993 방문 판매업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화장품 방문 판매
- 정수기 방문 판매
-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 판매

색인어 건강식품방문판매, 방문판매, 정수기방문판매및관리, 다단계방문판매, 교육자재방문판매, 방문판매(서적 화장품 정수기등), 서적방문판매, 외판업체(서적등; 방문판매), 정수기방문판매, 책방문판매, 화장품방문판매

2-6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분류코드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각종의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스키 임대
- 장난감 임대
- 자전거 임대
- 물놀이기구 임대
- 카누 임대

제 외

·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관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물놀이시설에서의 물놀이기구 임대(91239)

색인어

게임기대여(오락용품), 경기용장비임대, 경기용품임대, 놀이게임기대여, 놀이용보트임대(물놀이시설제외), 물놀이기구임대(물놀이시설제외), 보트임대(놀이용 ; 물놀이시설에서의대여제외), 스키화임대, 여가용기기임대, 여가용품임대, 오락용기구임대, 오락용보트설비임대(승무원없이), 오락용보트임대(물놀이시설에서의대여제외), 오락용품임대, 운동용장비임대

3**[스포츠 서비스업]****3-1** 스포츠 경기업**분류코드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프로야구단
- 프로축구단
- 동계스포츠 클럽
- 실업경기단체
- 체스 클럽
- 사격 클럽
- 프로게임단

제 외

-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

색인어

스포츠클럽운영(프로야구단등), 이중격투기프로팀, 경기단체운영, 경륜(싸이클)경기단운영, 경마단운영, 농구단운영, 럭비단운영, 마라톤선수단운영, 배구단운영, 수영선수단운영, 실업경기단운영, 실업경기단체운영, 싸이클경기단운영, 씨름선수단운영, 아마추어농구단운영

3-2 스포츠 베팅업

분류코드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스포츠복권 발행
- 기업식복권 발행
- 즉석식복권 발행
- 복권판매소

색인어

즉석복권판매, 로또복권판매, 로또복권발행, 복권발행, 전자복권발행, 복권판매소운영

분류코드 91249 기타 잭블링 및 베팅업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1113)

색인어

게임유기장운영, 경마진흥(TV경마장 ; 마권업), 내기도박장운영, 도박시설운영, 도박장운영, 룰렛게임장운영(도박), 마권영업(장외경마장), 빙고게임장운영(도박), 빠징코운영, 성인오락실(카지노등도박장), 슬롯머신운영, 주사위게임장운영(도박), 카드게임장운영(도박), 카지노운영, 판게임시설운영

3-3 스포츠 마케팅업**분류코드 73901 매니저업**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고객을 위하여 계약협상, 금전문제 관리, 경력홍보 등을 수행한다.

예 시

- 유명인사 매니저
- 모델 매니저

색인어

스포츠에이전시, 가수관리대리회사, 극작가대리서비스, 매니저서비스, 매니저업(개인관리대리), 매니지먼트서비스, 모델매니저서비스, 연예단체대리서비스, 연예인대리서비스, 연예인매니저, 예술인매니저서비스, 운동선수매니저서비스, 유명인사매니저서비스, 작가매니저서비스, 체육인매니저서비스

분류코드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지적재산권 감정 및 알선
-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 복제권 감정 및 알선
- 회원권 중개

제 외

- 무형재산권 임대(69400)

색인어

건설면허중개, 사진저작권중개, 골프회원권중개, 기업합병(M&A)중개, 도메인매매중개, 무형재산권감정대리서비스, 무형재산권중개서비스, 무형재산권평가대리서비스, 복제권감정서비스, 복제권중개, 사업알선서비스, 사업체매매중개서비스, 사업체합병자문서비스(M/A), 사업체합병중개서비스(M/A), 산업재산권중개서비스

분류코드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지적재산권 감정 및 알선
-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 복제권 감정 및 알선
- 회원권 중개

제 외

- 무형재산권 임대(69400)

색인어

건설면허중개, 사진저작권중개, 골프회원권중개, 기업합병(M&A)중개, 도메인매매중개, 무형재산권감정대리서비스, 무형재산권중개서비스, 무형재산권평가대리서비스, 복제권감정서비스, 복제권중개, 사업알선서비스, 사업체매매중개서비스, 사업체합병자문서비스(M/A), 사업체합병중개서비스(M/A), 산업재산권중개서비스

분류코드 71531 경영컨설팅업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일반경영 자문
- 전략기획 자문
- 특정부문 경영자문
- 시장관리 자문
- 생산관리 자문
- 재정관리 자문
- 인력관리 자문

색인어

시장관리자문서비스, 인력관리자문서비스, 인사자문서비스, 일반경영자문서비스, 재무관리서비스(경영상담), 재정관리자문서비스, 전략기획자문서비스, 전문경영자문서비스, 조직관리자문서비스, 중소기업진단사사무소, 중소기업컨설팅서비스(경영), 축산경영컨설팅서비스, 컨설팅회사(사업및경영상담), 특정부문경영자문서비스, 병원경영컨설팅서비스

분류코드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독립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경마 및 경주차 소유주, 코치,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건의 훈련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 외

-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85611)

색인어

스포츠지도자 협회, 단증발급(스포츠) 단체, 경기지원단체, 당구연맹, 합기도연맹, 봅슬레이연맹, 싸이클연맹, 스쿼시연맹, 역도연맹, 프로테니스선수(자영), 하키심판, 감독(운동관련 ; 자영), 개사육훈련장, 개훈련소, 경기기록계원(자영)

3-4 스포츠 미디어업**분류코드 58121 신문 발행업**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발행하는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경제신문 발행
- 스포츠신문 발행
- 일반신문 발행

제 외

- 생활정보지 발행(58123)
- 전문회보, 주간뉴스 및 주간지(58122)
- 방송 또는 신문사, 출판사 및 기타 언론사에 뉴스자료 제공 활동(63910)

색인어

국문판신문발행(주3회이상), 석간신문발행, 신문발행(일간및격일간), 외국문판신문발행(주3회이상), 일간신문발행, 전자신문발행, 조간신문발행, 중앙일간지발행, 지방신문발행(일간및격일간), 향토신문발행(일간및격일간)

분류코드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계간, 연간 등의 정기간행물 및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주간신문 발행
- 월간지 발행

제 외

- 신문 발행(58121)

색인어

간행물발행(주간 월간 계간지등), 간행물출판(정기및부정기), 경마신문발행, 경제잡지발행, 계간지발행, 그래프잡지출판(정기간행물), 기관지발행, 기관지출판, 미용잡지출판(정기간행물), 사보(社報)신문발행, 사보(社報)출판, 순간지발행, 신문발행(전문지), 월간지발행, 의학신문발행

분류코드 60222 유선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종합유선방송
- 케이블방송

제 외

- 위성방송(60229)

색인어

케이블방송사(유선방송), 유선방송(케이블TV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지역유선방송,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역케이블TV방송, 지역CATV, 케이블텔레비전방송, 케이블TV방송, 텔레비전방송(유선방송), CATV, SO사(한국케이블TV방송), TV방송(유선방송)

분류코드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위성방송

제 외

- 유선방송(60222)
-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60221)
- 통신위성 운영(61299)

색인어

스카이라이프방송(위성방송), 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 TV방송(위성방송), 위성방송채널운영

3-5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분류코드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 영상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 학습정보 온라인 서비스
-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제 외

-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63120)

색인어

DB구축, 700번전화서비스, 경마예상정보제공업(온라인),
 경제정보제공서비스(온라인), 기상정보제공서비스(온라인),
 데이터베이스구축(정보제공), 도로교통정보제공서비스(온라인),
 부동산정보제공서비스(온라인), 사주팔자음성서비스,
 영상다운로드서비스제공(온라인), 영화다운로드서비스제공(온라인),
 오디오파일다운로드서비스제공(온라인), 운세음성서비스, 운세제공서비스(온라인),
 음성사서함서비스(700번전화서비스)

3-6 스포츠 교육기관

분류코드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체조, 무술 등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태권도학원
- 축구교실
- 요가학원
- 체육 입시학원

색인어

스포츠교육기관, 국선도, 암벽등반(교육), 스쿠버(교육), 잠수기술교육(스포츠),
 단전호흡교육, 기수련교육, 단월드운영, 단학수련교육, 짐볼교육, 체육입시학원,
 경기운동강습업, 운동학교운영, 검도장운영(교육위주), 격투기도장운영(교육위주)

분류코드 85612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바둑교육 등 레크레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바둑 교실

색인어

레크레이션교육기관, 놀이학교(유치원 어린이집제외), 종이접기교육(취미),
 무도학원, 노래교실(교육위주), 스포츠댄스교습, 레고블록을이용한교육, 가베교육,
 바둑교습소운영, 바둑교실운영, 오락학교운영, 교습소(사교댄스교습소),
 댄스교습소운영, 사교댄스교습소

3-7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온라인 게임 S/W 개발
- 휴대폰용 게임 S/W 개발
- PDA 게임 S/W 개발
-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제 외

- PC 패키지게임 S/W 개발(58219)
-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 S/W 개발(58219)

색인어

게임개발(온라인및모바일용S/W), 게임소프트웨어개발(온라인및모바일용), 모바일게임개발(소프트웨어),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 온라인게임개발(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프로그램자문서비스(게임용), 휴대폰용게임개발(소프트웨어), 휴대폰용게임소프트웨어개발, PDA게임개발(소프트웨어), PDA게임소프트웨어개발

분류코드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기기에 이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아케이드 게임 S/W 개발업
- PC 패키지게임 S/W 개발
- 비디오 콘솔게임 S/W 개발
- 휴대용게임기용 게임 S/W 개발

제 외

- 온라인 및 모바일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58211)

색인어

비디오게임개발(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개발, 게임개발(비디오 아케이드 휴대용게임기용S/W), 게임소프트웨어개발(비디오 아케이드용), 게임소프트웨어개발(휴대용게임기용), 비디오게임개발(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개발, 아케이드게임개발(소프트웨어), 아케이드게임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패키지게임개발(소프트웨어), 컴퓨터패키지게임소프트웨어개발, 휴대용게임기용게임개발(소프트웨어), 휴대용게임기용게임소프트웨어개발

3-8 스포츠 여행업

분류코드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일반여행사
- 국외여행사

제 외

- 국내 여행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75212)

색인어

관광여행사(국제), 관광여행알선(국내외 ; 일반), 국내외여행관련서비스, 국외여행사, 국제여행사, 여행사(일반및국외), 여행알선대리서비스(국제), 일반여행사운영(국제), 해외여행알선서비스

분류코드 75212 국내 여행사업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국내관광알선서비스, 국내여행사, 여행사(국내)

분류코드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관광 안내소
- 카풀체계 운영
- 매표대리
- 숙식 알선
-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 숙박 예약대리

색인어

경기관광공사, 버스카드충전, 시내버스매표소, 가이드업(여행자안내), 개인여행안내, 관광안내소, 관광여관안내소, 관광여행안내소, 매표대리서비스(여행및운송관련), 매표소(대리 ; 운송용), 매표소운영(터미널운영사업체제외), 버스승차권판매대리서비스, 버스정기권판매대리, 버스토큰판매소, 버스회수권판매대리

【부록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의 정의

○ 스포츠산업

스포츠 산업이란 스포츠를 기업활동의 수익대상으로 바라보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하는 일체의 생산활동

○ 캠핑용 직물제품

캠핑용 직물제품은 캠핑에 사용되는 텐트, 로프와 같은 직기에 걸쳐 짠 물건으로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등의 제품

예 시

- 텐트(코베아, 콜맨 등) · 침낭(네파, 카벨라스) · 로프

○ 구멍 자켓, 구멍 벨트

구멍 자켓과 구멍 벨트는 수상용 인명구조용을 목적으로 부력재 또는 co2 gas를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

예 시

- 구멍조끼(버팔로) · 구멍벨트(씨울프)

○ 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 의류 제조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스포츠 종목의 특성인 기능적, 활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되는 의류제품

예 시

- 르까프 · 프로스펙스 · 휠라

○ 스포츠의류 부분품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 제조에 필요한 부품

예 시

- 한길섬유 · 고어텍스 · COLDBACK · SILFINE

○ 등산용 배낭

등산에 사용되는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형질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 가방

예 시

- 콜롬비아 · K2 · 코오롱 · MILLET

○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와 특수한 종목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발의 제조

예 시

- 육상 스파이크 · 발레슈즈 · 농구화 · 테니스화

○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경기를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운동화의 부품

예 시

- 축구화 밑창(파라마스 회사)

○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수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탄알이 발사되도록 만든 총, 경기용 총포탄은 경기에 사용되는 총포의 탄환

예 시

- 공기총(덕일, 신성산업) · 총포탄((주)풍산)

○ 범선, 요트, 카누, 카약

범선은 바람을 이용한 선박으로 돛단배 또는 돛배라고 불리우며,

- 요트는 배안에 세워진 돛대와 고물(뒷부분)에 달린 키를 조정하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나아가는 선박
- 카누는 선수·선미가 뺄족하고 1개 이상의 노로 움직이는 경량의 소형 선박으로 정의
- 카약은 좌석에 앉아 발을 앞으로 하고 노를 좌우로 번갈아 저어 빠르기를 겨루는 카누 경기

예 시

- 범선, 요트(베스트마린, 코오롱마린(구매, 대여업) 등)
- 카누, 카약(콜맨, K2 등)

○ 무도장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

예 시

- 스타 무도장 · 천호 무도장 · 을지 무도장

○ 체육공원 운영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 중 하나로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운영

예 시

- 올림픽 공원 · 금정 체육공원 · 한강공원

○ 스포츠토토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 투표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스포츠레저 게임(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

예 시

- 스포츠토토 · 스포츠 프로토

○ 스포츠인 매니저

스포츠인 매니저는 선수의 입단, 연봉, 인드스먼트(광고, 협찬, 라이선싱, 출판 등), 미디어관계 관리를 큰 축으로하여 선수의 훈련지원, 재무관리, 문제해결 법적자문에 이르는 모든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

예 시

- IB스포츠 · 세마스스포츠마케팅

○ 스포츠용 자전거

견고하고 전문산악용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MTB를 포함하여 일반온로드 위주로 달리면서도 MTB처럼 스포츠틱한 디자인과 구성을 가진 자전거(싸이클, 자전거모기용 BMX 등)

예 시

- 삼천리 · 코렉스 · 알톤

○ 댄스교습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율동적인 예술 활동을 교습(발리댄스, 탭댄스, 포크댄스, 사교댄스, 힙합댄스 등)

예 시

· DFA Academy

· 슈퍼브댄스 스튜디오

【부록 4】 조사표와 결산서의 관계

| 도소매업 |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총매출액	1,234		
상품매출액	1,000		
기타영업수익	234		
II. 매출원가	740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기초상품매출액	45		
2. 당기상품매출액	735		
3. 기말상품매출액	40		
III. 매출총이익	494		
IV. 판매비와 관리비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00		
2. 퇴직급여	20		
:	:	:	
11. 수도광열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⑧항 (3)영업이익	

| (교육)서비스업 |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총매출액	234		
상품매출액	1,000		
기타영업수익	623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II. 매출원가	123		
1. 기초상품매출액	500		
2. 당기상품매출액	494		
3. 기말상품매출액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III. 매출총이익	200		
IV. 판매비와 관리비	20		
1. 급여	:	:	
2. 퇴직급여	5		
:	30		
11. 수도광열비	114	⑧항 (3)영업이익	

| 제조업 |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총매출액	1,000			
상품매출액	234			
기타영업수익		623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II. 매출원가	523			
1. 기초상품매출액	100			
2. 당기상품매출액		494		
3. 기말상품매출액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III. 매출총이익	200			
IV. 판매비와 관리비	20			
1. 급여	∴	∴		
2. 퇴직급여	5			
∴	30			
11. 수도광열비		114	⑧항 (3)영업이익	

【부록 5】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체육과학연구원)와 한국통계진흥원에서는 「2012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2013. 10. 16.~ 11. 30.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제공되며,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내용 및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작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

★는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입니다.

★조사원ID	★행정구역 분류번호	★산업분류	★ 사업체 고유번호

일반사항

귀 사업체의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		1 남 2 여	3 창설연월	□□□□ 년 □□ 월
4 소재지	읍·면·(법정)동 빌딩·시장·상가	리	번지 동	호 통 반 층 호
5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체명 : 법인명과 실제 통용명칭이 다를 경우 공식적 명칭을 기재한 후 ()에 실제 통용명칭을 기입

※ 창설연월 : 현재의 산업활동(업종)을 시작한 시기

6 조직형태

귀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개인사업체	2 회사법인	3 회사이외 법인	4 비법인단체	5 국가·지방자치단체
6-1 사업체구분	회사법인·회사이외 법인인 경우만 응답 1 단독사업체 2 본사·본점 3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6-2 자본금	회사법인인면서 단독사업체, 본사·본점인 경우만 응답 () 백만원			

※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 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으로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7 종사자수 2012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수, 인력충원 현황 및 연간 급여액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 명, 백만원)

	종 사 자 수			연간 급여액	인력충원 현황	
	남	여	계		'12년 신규자수	'13년 신규자수 (계획된 인원 포함)
합 계 (①+②+③+④+⑤)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상 용 근 로 자				/	/	/
② 임 시 및 일 용 근 로 자						
③ 자 영 업 자						
④ 무 급 가 족 종 사 자						
⑤ 기 타 종 사 자						

2012.12.31. 현재 종사자 수를 기입(연말기준). 단, 계절성을 지닌 사업체(수영장, 스키 등)는 영업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 수를 기입

-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재(고용)계약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 모두 포함함
-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③ 자영업자 :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법인사업체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
- ⑤ 기타 종사자 :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기본급 등 일정급여는 없으며, 만약 일정급여를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및 일용으로 기입)

※ 연간급여액은 상용근로자의 급여제수당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입하되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제외(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8 사업실적 2012년 1년 동안 영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제표 작성 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 해당란에 ✓ 표시

※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사업실적은 재무제표와 일치시킬 것이고, 재무제표를 미작성 시 실제 사업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입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1) 매출액(수익액)	2012년 1년간 영업활동(제품제조, 상품판매나 용역 제공 등)으로 얻은 수익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수출액	매출액 중 해외로 수출한 매출액								
(2) 영업비용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비용								
가. 매출원가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매출원가 비용								
• 제조업(제조원가)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제조원가								
• 도소매업(매출원가)	상품매입비 등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 서비스업(매출원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나.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를 제외한 인건비, 임차료, 기타영업비용 등								
(3) 영업이익	*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8-1 스포츠산업 비중 내수·수출 및 스포츠산업·비스포츠산업 비중을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단위 : %)

총 매출액 비중	내수 매출액 비중		수출 매출액 비중	
	① 스포츠산업	② 비 스포츠산업	③ 스포츠산업	④ 비 스포츠산업
100.0% (①+②+③+④)				

※ 내수 매출액 및 수출 매출액 비중을 스포츠산업과 비 스포츠산업으로 구분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

9 사업체 경영전망 전반적인 국가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귀 사업체의 입장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경영 현황 및 전망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2012년(2011년 대비 증가율)	2013년(2012년 대비 증가율)
()%	()%

※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하며, 2013년 매출액이 2012년 대비 5.5% 증가가 예상될 경우 +5.5%, 10.0% 감소가 예상될 경우 -10.0%로 기입

10 사업의 종류 귀 사업체의 「사업의 종류」를 1~4에 먼저 √ 표시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사업의 종류	사업 내용 무엇을(제품, 서비스 내용) / 누구에게 / 생산제공하였는가?	비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의류(체육복, 등산복 등)를 제조 · 캠핑용품(텐트, 침낭)을 제조 · 당구장·수영장·골프연습장 등을 운영 · 자전거를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 태권도를 학생을(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습 	
1 스포츠 용품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 및 임대업		→ 11-1 항목으로
2 스포츠 시설업 - 스포츠 시설 운영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 11-2 항목으로
3 스포츠 서비스업 - 스포츠경기서비스업(스포츠경기업, 베팅업, 마케팅업), 스포츠정보서비스업(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서비스업(게임, 여행업 등)		→ 11-3 항목으로

11 특성항목

11-1 상품별 구성비 스포츠용품별 내수 및 수입금액을 기입한 후 이를 다시 용품별로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금액 (백만원)	구 성 비 (%)					
		합계	스포츠 음료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 류	라켓류
1 스포츠용품별 내수		100.0%					
2 스포츠용품별 수입		100.0%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하며 수입은 완제품 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11-2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고객 수) 2012년 영업한 개월 수와 연간 이용인원 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연간 영업개월 수	()개월	· 사업체에서 2012년 중에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파업, 휴업 등은 제외) · 한 달 간 정상적인 영업일수의 1/2 이상을 영업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
2 연간 이용인원(고객) 수	()명	· 2012년 1년간 사업체의 사업시설을 이용한 인원(고객)수를 유료 입장객 또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기입

11-3 매출액 고객연령별 구성비 매출액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단위 : %)

매출액 비중	1 7세 이하	2 8세~13세	3 14세~19세	4 20세~39세	5 40세~59세	6 60세 이상
100.0%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

12 설문문항

※ 문항별로 가장 주된 것 하나만 √ 표시를 하고, 「기타」인 경우는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2.1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스포츠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전문인력양성 | <input type="checkbox"/> 2 국산제품 품질 제고 |
| <input type="checkbox"/> 3 자체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 <input type="checkbox"/> 4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 <input type="checkbox"/> 5 대형화·전문화 | <input type="checkbox"/> 6 관련 정책부처 지원 |
| <input type="checkbox"/> 7 산·학·연 협력강화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12.2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스포츠산업이 육성·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전문인력부족 | <input type="checkbox"/> 2 사업체 규모 영세성 |
| <input type="checkbox"/> 3 자금부족 | <input type="checkbox"/> 4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
| <input type="checkbox"/> 5 제도 및 규제 과다 | <input type="checkbox"/> 6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
| <input type="checkbox"/> 7 정부 지원 미흡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12.3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

스포츠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전문인력양성지원 | <input type="checkbox"/> 2 자금지원 확대(용자확대 등) |
| <input type="checkbox"/>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input type="checkbox"/> 4 스포츠용품 인증제도(KISS마크) 활성화 및 국제인증획득 지원 |
| <input type="checkbox"/> 5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 <input type="checkbox"/> 6 각종 국제 대회 유치(월드컵, 올림픽 등) |
| <input type="checkbox"/> 7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12.4 귀사의 스포츠산업 매출 증대 방안

귀사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전문인력 채용 | <input type="checkbox"/> 2 자체 브랜드 및 신규제품 개발 |
| <input type="checkbox"/> 3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input type="checkbox"/> 4 내수시장 확대 |
| <input type="checkbox"/> 5 해외시장 진출 확대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

비고	· 휴·폐업 및 매출액 증감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	() -	() -

☺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행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 수행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과학연구원

❖ 본 통계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있으며,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 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13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